

#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통합공시기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통합공시점검

안 중 기

2023. 12.



##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안 중 기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http://www.fis.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200 ✉ [joonggiahn2022@fis.kr](mailto:joonggiahn2022@fis.kr)

## 요약

### 1. 서론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
  -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인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국민-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필요
  -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권리를 보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
- 국민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제도들(정보공개청구,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은 한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보공개는 청구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원하는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를 공유할 수 없음
  - 사전적 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주요 사항들이 공공기관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어려움
-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있는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를 추가로 도입

## 2. 통합공시제도 의의

□ 통합공시제도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공시하는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정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

- 통합공시는 경영공시 사항 중에서 국민,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항(예: 복리후생비, 임직원 채용 현황)에 초점을 맞춤
- 정부는 주요 항목을 통합공시하는 표준양식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공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맞추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시를 실시
-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인 알리오를 통해 이루어짐

□ 통합공시제도는 ① 통합공시기준, ② 알리오, ③ 통합공시점검으로 구성

- 통합공시기준은 공시항목,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기반해 통합공시를 실시
-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는 통합공시기준을 바탕으로 공시정보를 알리오에 입력하며,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보는 알리오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
- 정부는 매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해 알리오에 공시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검증

## 3. 통합공시제도: ① 통합공시기준

□ 통합공시기준은 통합공시제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문에 담기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나 통합공시 매뉴얼에 포함

- 통합공시기준은 통합공시 항목, 방법, 절차 등 통합공시제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
- 그러나 통합공시기준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통합공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음

- 그래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등은 통합공시기준 본문에 포함되지 않고 별표의 형식으로 제시
- 또한 본문과 별표에 담지 못하는 항목별 통합공시 요령, 공시 유의사항 등은 통합 공시 매뉴얼에 포함

□ 통합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ESG 관련 사항 등 항목 추가 예상

- 2007년 통합공시제도 도입 당시 27개에 불과하던 공시항목은 2023년 46개로 크게 증가
- 공공기관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관련 공시를 강화
- 먼저 2021년에는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 혹은 보완
- 2022년에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ESG 평가지표를 참고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
- 202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 범위가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에서 외부배출(Scope 3)까지 확대되었으며, ‘ESG 운영위원회’, ‘ESG 경영 현황’ 등의 항목이 신설. 또한 정부는 공시항목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해 ‘ESG 운영’ 대분류를 추가

□ 정부는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공공기관의 ESG 공시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ESG 국제동향 등 공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필요

- 첫째, 정부는 민간부문의 ESG 공시제도 동향 - 예를 들어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IFRS S1과 IFRS S2 - 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중에서 공공부문에 적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입

- 둘째, 정부는 공공부문이 공개하는 정보 중 통합공시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 셋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혹은 ESG 경영보고서와 통합공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함. 정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ESG 경영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항목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ESG 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4. 통합공시제도: ② 알리오 시스템

### □ 알리오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수단

- 알리오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알리오는 2006년 12월 구축된 이후 수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령 정부는 2015년 4월에 민간의 전자공시 방식인 DART를 도입했고, 2022년 1월에 알리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성을 제고
- 연간 알리오 접속자는 2017년 약 330만 명에서 2022년 약 1,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알리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
-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고, 국민은 이러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알리오를 방문하는 국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 알리오는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시항목에 대한 통계, 주요 수시항목에 대한 정보, 공공기관 전체의 신규채용 등 정보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에 대한 주요 통계를 제공

- 알리오 이용자는 기관별 공시를 통해 특정 공공기관의 모든 공시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 공시를 통해서 개별 공공기관의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주요 수시공시는 채용정보, 임원모집공고 등 주요 수시항목의 현황과 통계를 보여줌

- 정보이용자는 주요 통계를 이용해 공공기관 전체의 신규채용,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재무정보 등을 파악
- 그리고 주요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의 공공기관 전체 현황은 통계분석 기능을 활용해 분석 가능

□ 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할 때, 정보 수요자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일반국민이 접속하는 알리오 홈페이지에 비해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
- 정부는 알리오 편집기 등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공시담당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

## 5. 통합공시제도: ③ 통합공시점검

□ 정부는 통합공시점검제도를 도입해 통합공시 정보가 정확한지, 정보이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통합공시점검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을 의미
- 통합공시점검은 201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제도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
- 제도 도입 이후 연 1회 실시되던 점검은 2018년도 점검부터 연 2회 실시되기 시작했고, 2021년도 점검부터 연 3회 실시
- 공시점검 지원기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점검용역을 수행하는 노무법인,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공시점검 지원기관이 공시점검에 함께 참여
- 정부는 공시점검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허위공시·공시오류·공시변경)를 발견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공시주기, 항목의 중요성, 과실 정도,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 상이



□ 정기적으로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가 줄어들

- 첫째,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점차 개선. 2014년에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부과한 평균별점은 21.3점에 이르렀으나, 2022년 공시점검에서 각 공공기관이 받은 평균별점은 3.2점에 불과
- 둘째, 소규모 기관의 평균별점이 대규모 기관의 평균별점을 상회. 구체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은 준정부기관의 평균별점을, 준정부기관의 평균별점은 공기업의 평균별점을 상회
- 셋째, 공시정보의 품질 개선 정도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은 2018년 11.0점에서 2021년 4.6점으로 크게 감소
- 넷째, 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가 줄어들. 최근 공공기관이 범하는 불성실공시의 대부분은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오기, 계산착오 등 경과실 때문

□ 또한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

- 공공기관의 별점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면, 정부는 해당기관을 기관주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 반대로 특정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매우 잘 수행한 경우, 정부는 해당기관을 우수공시기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
- 2014년에 기관주의를 받은 공공기관은 129개, 불성실 공시기관은 22개였으나, 2022년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은 1개였고,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음
- 다만, 우수공시기관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 최근 우수공시기관은 크게 줄어들고 공시향상기관은 크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우수공시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향상기관의 지정 요건을 약화했기 때문

□ 통합공시점검은 공시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점검에 대한 피드백, 정책점검, 공공기관의 자율 점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존

- 첫째, 정부는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 강화 측면에서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공시기준과 통합공시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때,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둘째, 통합공시점검의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함. 정부는 항목별 공시품질을 분석하거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통합공시점검을 적절히 활용 가능
- 셋째, 공공기관의 자율점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공공기관이 공시점검의 주체로 참여할 때, 외부점검과 내부점검은 서로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6. 결론

- 본 보고서는 통합공시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통합공시기준, 알리오 시스템, 통합공시점검 측면에서 논의
-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공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 통합공시제도는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알리오의 사용자 환경도 점차 개선
  - 더욱이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
- 통합공시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공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
  - 첫째, 민간의 ESG 공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ESG 공시 개선 검토
  - 둘째, 국민이 이용하는 알리오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사용하는 알리오 편집기의 품질과 기능 향상 방안 검토
  - 셋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시점검을 통한 정책 점검 기능을 제고
  - 넷째, 정부는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점검결과를 활용해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통합공시기준과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

---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II. 통합공시제도 의의 .....         | 8  |
| 1. 통합공시제도 의미 .....          | 8  |
| 2. 통합공시제도 구성 요소 .....       | 12 |
| III. 통합공시제도: ① 통합공시기준 ..... | 13 |
| 1. 통합공시기준 의의 .....          | 13 |
| 2. 통합공시기준 주요 내용 .....       | 14 |
| 3. 공시항목과 분류체계 개편 현황 .....   | 22 |
| 4. 향후 고려사항 .....            | 33 |
| IV. 통합공시제도: ② 알리오 시스템 ..... | 40 |
| 1. 알리오 시스템 의의 .....         | 40 |
| 2. 알리오 시스템 변천 .....         | 42 |
| 3. 알리오를 통한 통합공시 현황 .....    | 47 |
| 4. 향후 고려사항 .....            | 51 |
| V. 통합공시제도: ③ 통합공시점검 .....   | 54 |
| 1. 통합공시점검 의의 .....          | 54 |
| 2. 통합공시점검 절차 및 방법 .....     | 57 |
| 3. 통합공시점검 결과 .....          | 69 |
| 4. 통합공시점검 사후조치 .....        | 71 |
| 5. 향후 고려사항 .....            | 78 |

---

## 목 차

|              |    |
|--------------|----|
| VI. 결론 ..... | 80 |
| 〈참고문헌〉 ..... | 88 |

## 표 목차

|                                                          |    |
|----------------------------------------------------------|----|
| 〈표 II-1〉 공공기관 경영공시 근거 규정 .....                           | 9  |
| 〈표 II-2〉 공공기관 통합공시 근거 규정 .....                           | 11 |
| 〈표 III-1〉 통합공시기준 적용 대상 (1): 공공기관 정의 .....                | 14 |
| 〈표 III-2〉 통합공시기준 적용 대상 (2): 공공기관 유형 및 구분기준 .....         | 16 |
| 〈표 III-3〉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 18 |
| 〈표 III-4〉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일부) .....                     | 19 |
| 〈표 III-5〉 통합공시 예외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 | 20 |
| 〈표 III-6〉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변동 현황 .....                       | 23 |
| 〈표 III-7〉 2021년 신설·보완된 ESG 공시항목 .....                    | 25 |
| 〈표 III-8〉 2022년 신설·보완된 ESG 공시항목 .....                    | 27 |
| 〈표 III-9〉 2023년 신설·보완된 ESG 공시항목 .....                    | 28 |
| 〈표 III-10〉 2022년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현황 .....                   | 30 |
| 〈표 III-11〉 2023년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현황 .....                   | 32 |
| 〈표 III-12〉 IFRS S1과 IFRS S2 개요 .....                     | 34 |
| 〈표 III-13〉 IFRS S1과 IFRS S2 핵심요소 .....                   | 35 |
| 〈표 III-14〉 공공기관의 환경정보 공개 현황 .....                        | 37 |
| 〈표 III-15〉 ESG 경영보고서 작성 예시 .....                         | 39 |
| 〈표 IV-1〉 알리오를 통한 통합공시 근거 규정 .....                        | 40 |
| 〈표 IV-2〉 2015년 알리오 시스템 개편 현황 .....                       | 45 |
| 〈표 IV-3〉 2022년 알리오 시스템 개편 현황 .....                       | 47 |
| 〈표 IV-4〉 2022년 알리오 편집기 개선 현황 .....                       | 53 |
| 〈표 V-1〉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1): 공시 책임자의 지정 .....                 | 54 |
| 〈표 V-2〉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2):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 .....                | 55 |
| 〈표 V-3〉 연도별 통합공시점검 주요 변동사항 .....                         | 56 |
| 〈표 V-4〉 2023년 공시점검 대상 부설기관 현황 .....                      | 58 |
| 〈표 V-5〉 통합공시점검 절차 .....                                  | 59 |
| 〈표 V-6〉 공시점검 지원기관 근거 규정 .....                            | 60 |
| 〈표 V-7〉 2020~2022년 통합공시 점검항목 현황 .....                    | 62 |
| 〈표 V-8〉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과 근거 규정 .....                      | 62 |
| 〈표 V-9〉 2023년 통합공시 항목별 공시구분 및 공시주기(일부) .....             | 63 |
| 〈표 V-10〉 중과실 판단기준 .....                                  | 64 |
| 〈표 V-11〉 불성실공시 정의 및 유형 규정 .....                          | 65 |

---

## 표 목차

|                                             |    |
|---------------------------------------------|----|
| 〈표 V-12〉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체계 .....               | 65 |
| 〈표 V-13〉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1): 정기공시 .....     | 67 |
| 〈표 V-14〉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2): 수시공시 .....     | 68 |
| 〈표 V-15〉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 .....            | 72 |
| 〈표 V-16〉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규정 .....         | 74 |
| 〈표 V-17〉 2021년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현황 .....     | 75 |
| 〈표 V-18〉 2022년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현황 .....     | 76 |
| 〈표 V-1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기준 변경 .....         | 77 |
| 〈표 V-20〉 2021년과 2022년 우수공시기관 지정 현황 비교 ..... | 77 |

## 그림 목차

|                                             |    |
|---------------------------------------------|----|
| 〈그림 Ⅰ-1〉 공공기관 지출 추이 .....                   | 2  |
| 〈그림 Ⅱ-1〉 통합공시제도 구성 .....                    | 12 |
| 〈그림 Ⅲ-1〉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추이 .....              | 23 |
| 〈그림 Ⅳ-1〉 알리오 연간 방문자 추이 .....                | 41 |
| 〈그림 Ⅳ-2〉 알리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 41 |
| 〈그림 Ⅳ-3〉 알리오 시스템 변천 .....                   | 43 |
| 〈그림 Ⅳ-4〉 알리오 공시 현황 .....                    | 48 |
| 〈그림 Ⅳ-5〉 알리오의 기관별, 항목별, 주요 수시공시 .....       | 49 |
| 〈그림 Ⅳ-6〉 알리오의 주요 통계, 통계분석 .....             | 50 |
| 〈그림 Ⅳ-7〉 알리오시스템 구성 .....                    | 51 |
| 〈그림 Ⅳ-8〉 알리오 시스템상 공시항목 입력 및 제출 절차(일부) ..... | 52 |
| 〈그림 Ⅴ-1〉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항목 추이 .....            | 61 |
| 〈그림 Ⅴ-2〉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 평균별점 추이 .....          | 69 |
| 〈그림 Ⅴ-3〉 공공기관 유형별 평균별점 추이 .....             | 70 |
| 〈그림 Ⅴ-4〉 과실 유형별 비중 .....                    | 71 |
| 〈그림 Ⅴ-5〉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 공시기관 추이 .....     | 73 |
| 〈그림 Ⅴ-6〉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추이 .....            | 75 |
| 〈그림 Ⅵ-1〉 통합공시제도 개선 방향 .....                 | 86 |





# I. 서론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국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왔다.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으로 구분된다(Musgrave, 1959). 정부는 공공재 등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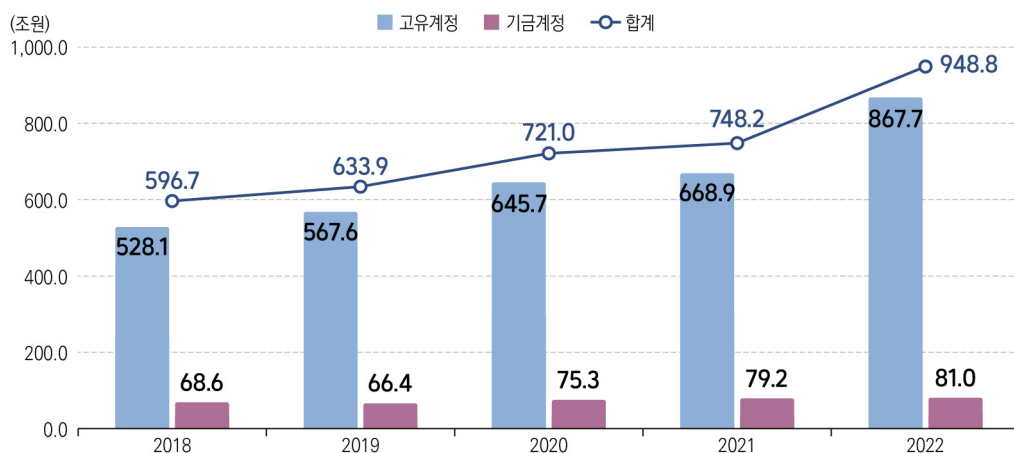
정부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시장 혹은 사회에 개입한다. 이때 직접적인 개입 방식은 정부가 직접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의 개입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정부조직 규모를 늘리는 것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직접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간접 개입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은 주로 민간부문이나 정부 이외의 다른 공공부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부는 정책결정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에 집중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는 정책집행 등의 업무는 정부 이외의 다른 조직이 대신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일종의 분업체계는 정책결정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윤태범, 2012).

정부는 민간위탁, 공공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이 중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 개입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출연·지원 등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관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347개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공공기관의 전체 지출(고유계정+기금계정) 규모는 약 948.8조 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2,150.6조 원)의 44.1%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2022년 총지출 규모는 682.4조 원이었다. 이처럼 명목 GDP, 정부 총지출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I-1〉 공공기관 지출 추이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이처럼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통제의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에는 복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조택, 2007; 유승원, 2009). 현실에서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정부에 위임한다. 이때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일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에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에도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 가령 공공기관은 공익이라는 불명확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

에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방만경영 등 도덕적 해이를 범할 수 있다(허경선·라영재, 2011).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중층적인 대리인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국민-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sup>1)</sup>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sup>2)3)</sup> 이 법률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규정한다.<sup>4)</sup> 정보공개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사전적 공개, 원문정보공개이다. 첫째, 국민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sup>5)</sup> 둘째,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1년 청주시 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과시켰다. 청주시장은 이와 관련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청주시 의회는 재의결을 거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된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주시장은 재의결되어 확정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청주시 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청주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이후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www.khan.co.kr/print.html?art\\_id=201905012152005](http://www.khan.co.kr/print.html?art_id=201905012152005)을 참조하여 작성함).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sup>6)</sup> 셋째,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sup>7)</sup>

하지만 국민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제도들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보공개는 청구인만

---

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을 대상으로 한다. 즉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원하는 정보를 확보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국민 들은 공공기관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정 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국민도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국민에 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단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사전적 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도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수단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가령 사전적 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주요 사항들이 공공기관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는 것이 쉽 지 않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 보공개청구, 정보의 사전적 공개, 원문정보공개와 별도로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일명 알리오 (ALIO)에 통합공시하고 있다. 이를 흔히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라고 부른다. 통합공 시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 보를 얻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알리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접속자 는 2017년 약 330만 명에서 2022년 약 1,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150만 건의 공시보고서를 알리오를 통해 공개했다.

이처럼 통합공시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대 표적인 수단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김진수 외(2010)는 2010년 당시를 기준으로 통합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 다. 하지만 2010년의 통합공시제도와 현재의 통합공시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 이 다르다. 예를 들어, 통합공시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통합공시점검은 2013년에

도입되었다. 이처럼 통합공시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통합공시제도의 운용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2022)은 매년 공공기관 현황과 관련된 편람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편람은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결과를 다룬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2022)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공기관 편람을 통해서 통합공시점검과 알리오, 통합공시기준을 포괄하는 통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2022)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ESG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ESG 관련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공시 항목, 그 중에서도 ESG 항목에 대한 설명만으로 통합공시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 등 통합공시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담당자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본 보고서를 통해 통합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공시제도의 의미와 구성요소에 대해서 검토한다. 정보공개제도와 통합공시제도의 관계, 경영공시제도와 통합공시제도의 차이점 등을 바탕으로 통합공시제도의 의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통합공시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의 구성요소를 세분한다.

이어서 통합공시제도의 구성요소인 통합공시기준, 알리오, 통합공시점검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통합공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통합공시기준의 적용 대상, 절차 및 방법, 공시항목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통합공시기준은 항목별 통합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공시기준

과 관련된 매뉴얼상의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ESG 관련 공시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ESG와 관련해 통합공시 항목과 분류체계의 개편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ESG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공시정보를 입력하고,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리오 시스템을 소개한다. 먼저 알리오 시스템의 의의와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알리오 시스템은 2007년 구축된 이후 수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발전해왔는데, 본 보고서는 이 중에서 알리오 시스템의 최초 구축과정, 2015년 전자공시시스템(DART) 도입과 2022년 사용자 친화적 개편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어서 실제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끝으로 알리오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간략히 논의한다.

셋째, 통합공시점검의 절차 및 방법, 점검 결과, 사후조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동안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변동되어왔는지를 점검횟수, 점검항목, 별점체계와 기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공시점검 도입 이후,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는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공공기관을 불성실 공시기관, 우수공시기관 등으로 지정한다.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혹은 공시향상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기관주의조치 혹은 불성실 공시기관)의 현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통합공시점검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바탕으로 통합공시점검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결론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의 운용 현황을 요약하고,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통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통합공시제도 의의

### 1. 통합공시제도 의미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개, 그리고 원문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청구한 청구인에게만 해당 정보가 공개되며, 사전정보공개나 원문공개제도는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있는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통합공시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공개한다. 그 결과 통합공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현황 등 각종 재무·비재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는데, 이를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라고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이유는, 정부·국회·시민단체·언론·국민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제도에 따라서 경영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공기관을 감시 및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는 것 못지않게,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정보공개 목적의 단순한 공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경영공시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가령 정보이용자가 A라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등 경영현황 정보를 찾고 있다고 하자. 이때 정보이용자는 A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영공시 항목에 들어가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공시제도는 여러 공공기관의 공시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단으로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이용자가 모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정보를 찾고 있다고 하자.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항시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다. 경영공시제도 아래에서, 정보이용자는 모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즉 경영공시제도 하에서 정보이용자는 공공기관 간의 공시정보를 비교하기 힘들다.

〈표 II-1〉 공공기관 경영공시 근거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부터 제34조의2(권고 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

---

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 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

이에 정부는 경영공시제도와 별도로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를 마련했다. 통합공시 제도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공시하는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정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공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영공시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통합공시는 경영공시 사항 중에서 국민,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기관이 경영공시하는 사항 중, 복리후생비, 임직원 채용 현황 등 일부 항목은 이해관계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요 항목을 선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공시와는 별도로 통합공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통합공시는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각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더라도, 기관별로 공시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하면, 정보이용자는 공공기관 간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주요 항목을 통합공시하는 표준양식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공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맞추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시를 실시한다.

셋째, 통합공시 정보는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다. 알리오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각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이용자는 알리오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 알리오는 기관별·항목별 공시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공시와 관련된 주요 통계와 통계분석을 제공한다. 정보이용자는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할 필요가 없으며, 알리오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표 II-2〉 공공기관 통합공시 근거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 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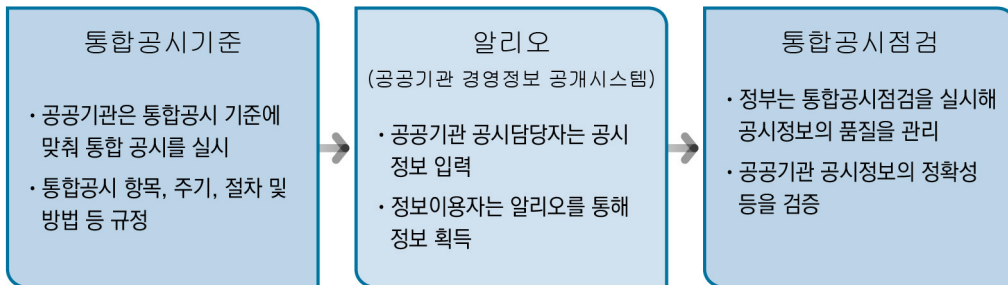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

## 2. 통합공시제도 구성 요소

정부는 통합공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맞추어 알리오에 정보를 공시한다. 또한 정부는 공시정보가 정확한지를 점검해 공시정보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이처럼 통합공시제도는 ①통합공시기준, ②알리오, ③통합공시점검으로 구성된다. 첫째, 통합공시기준, 즉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공시 항목,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기반해 통합공시를 실시한다.<sup>8)</sup> 둘째,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는 통합공시기준을 바탕으로 공시 정보를 알리오에 입력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보는 알리오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며, 누구든지 알리오에 접속해 공시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매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해 알리오에 공시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통합공시점검 결과는 통합공시기준이나 알리오의 개선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통합공시제도의 구성 요소별로 운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본다.

〈그림 II-1〉 통합공시제도 구성



8)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통합공시기준)’은 공시항목,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통합공시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통합공시점검은 통합공시기준의 하위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합공시기준과 통합공시점검을 구분하고, 통합공시기준에 포함된 통합공시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다룬다.

### Ⅲ. 통합공시제도: ① 통합공시기준

#### 1. 통합공시기준 의의

공공기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해서, 통합공시 항목,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통합공시제도의 근거 규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통합공시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12조 제4항은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한다.<sup>9)</sup> 통합공시 항목,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통합공시기준)’은 2007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후 수차례에 걸친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해왔다.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공시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한다.<sup>10)</sup> 하지만 통합공시기준 본문은 모든 공시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뿐이다. 통합공시기준 본문은 개별 공시항목의 세부 공시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통합공시기준 본문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정부는 통합공시기준 이외에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sup>12)</sup>

여기서는 통합공시기준 본문과 별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 문서 작성지침’에 나온 내용 중 통합공시 항목, 주기, 절차 및 방법 등 통합공시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본다.

9)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기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1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2조.

1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4조.

12)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5조.

## 2. 통합공시기준 주요 내용

먼저 통합공시기준은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sup>13)</sup> 여기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출연·지원 등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

〈표 III-1〉 통합공시기준 적용 대상 (1): 공공기관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조.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다(윤태범, 2012). 이때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도는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보통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며,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 관계를 추구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직원정원, 총수입액, 자산 규모,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구분한다.

우선 공기업은 직원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기금관리 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기업은 크게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을 말하며,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 원,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기금관리 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며,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관광공사 등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끝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이에 속한다.

〈표 Ⅲ-2〉 통합공시기준 적용 대상 (2): 공공기관 유형 및 구분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 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정부는 2023년에 총 34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도에 350개 기관에 비해 3개 기관이 줄어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새롭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모든 기관은 통합공시의 대상이며 통합공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표 III-3〉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구분        |         | 2022년 | 2023년 |          |    |    |     |
|-----------|---------|-------|-------|----------|----|----|-----|
|           |         |       |       | 전년 대비 증감 | 신규 | 해제 | 변경  |
| ① 공기업     |         | 36    | 32    | △4       | -  | -  | △4  |
|           | ■ 시장형   | 15    | 13    | △2       | -  | -  | △2  |
|           | ■ 준시장형  | 21    | 19    | △2       | -  | -  | △2  |
| ② 준정부기관   |         | 94    | 55    | △39      | -  | -  | △39 |
|           | ■ 기금관리형 | 13    | 11    | △2       | -  | -  | △2  |
|           | ■ 위탁집행형 | 81    | 44    | △37      | -  | -  | △37 |
| ③ 기타 공공기관 |         | 220   | 260   | +40      | +1 | △4 | +43 |
| 계(①+②+③)  |         | 350   | 347   | △3       | +1 | △4 | -   |

자료: 기획재정부(2023a)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시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즉 알리오를 통해 공시한다.<sup>14)</sup> 공시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으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한다. 그리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 그 사유를 게재한다.<sup>15)</sup>

통합공시기준 본문은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표를 통해 별도로 제공된다.<sup>16)</sup> 아래의 표는 통합공시기준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의 일부를 보여준다. ‘일반현황’ 항목부터 ‘연구보고서’ 항목까지 총 46개 항목의 세부 공시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가령 ‘임원 현황’은 기관 운영(대분류) - 인력관리(중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공시기준은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 경력, 선임절차이다.

14)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2조.

15)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3조.

16)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4조.

〈표 III-4〉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일부)

| 대분류     | 중분류  | 항 목             | 기 준                                                                                                   | 갱신주기                                                          |
|---------|------|-----------------|-------------------------------------------------------------------------------------------------------|---------------------------------------------------------------|
| I. 기관운영 |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 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 정기공시: 연 1회(4월말)                                             |
|         |      | 2. 내부규정         | ■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br>*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및 노동조합 제도 등 포함                                                     | - 수시공시<br>*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         | 인력관리 | 3. 임직원 수        | ■ 임원수<br>■ 일반정규직(정원, 현원), 무기계약직(정원, 현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비정규직 전환 비율, 소속 외 인력, 기타<br>■ 직급별 인원수(남성, 여성) | - 정기공시: 연 4회 (분기별)                                            |
|         |      | 4. 임원현황         | ■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 - 수시공시<br>*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         |      | 5. 신규채용 현황      | ■ 신규채용 실적<br>■ 청년·여성·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 지역인재·고졸인력 신규 채용 실적<br>■ 청년인턴 채용현황                             | - 정기공시: 연 4회 (분기별)                                            |
|         |      | 6. 임직원 채용정보     | ■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포함)                                                                    | - 수시공시<br>* 채용정보 공고기간 시작 일까지<br>*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는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         |      | 7. 퇴직 임직원 재취업현황 | ■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br>- 성명, 퇴직일, 퇴임시 기관명, 재취업 회사명, 재취업일<br>*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통합<br>■ 남녀 이직자 현황 및 비율        | - 정기공시: 연 4회 (분기별)                                            |
|         |      | 8. 징계현황         | ■ 징계제도 운영현황                                                                                           | - 정기공시: 연 1회 (4월말)                                            |
|         |      |                 | ■ 징계처분 결과                                                                                             | - 정기공시: 연 4회 (분기별)                                            |
|         |      | 9. 임원 국외출장내역    | ■ 임원 국외출장 정보, 출장보고서                                                                                   | - 수시공시<br>*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이외에도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공시항목의 갱신주기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표에 제시된 갱신주기에 따라 통합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해 공시한다.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연 1회), 매반기(연 2회) 또는 매 분기(연 4회)에 일괄 공시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요약 재무상태표’와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정보를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연 1회(4월 말) 정기 공시한다.<sup>17)</sup>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기업은 관련 정보를 연도 말, 반기 결산기준으로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공시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신규채용 실적, 청년·여성·장애인 등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 채용현황을 분기별로 연 4회 정기 공시한다. 한편 수시공시 항목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 혹은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sup>18)</sup> ‘내부규정’, ‘임원 현황’, ‘임직원 채용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수시 공시 항목에 속한다.

공공기관은 각 주무기관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한 항목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항목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으면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sup>19)</sup>

#### 〈표 III-5〉 통합공시 예외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17) 연 1회 정기공시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4월 말에 공시한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1월 말, 7월 말, 혹은 10월 말에 공시한다. 이를테면 ‘ESG 경영 현황’ 항목의 ESG 추진체계 및 현황을 1월 말에, ‘사회공헌 활동’ 항목의 봉사활동 실적과 기부 실적은 7월말에, ‘환경보호’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을 10월말에 연 1회 공시한다.

18)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

19)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7조.

---

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처럼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각 항목의 세부 공시기준과 갱신주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 통합공시기준과 이의 별표를 활용해 개별 항목

의 공시방법과 작성요령을 터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적절히 공시하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다.<sup>20)</sup> 통합공시기준이나 이의 별표에 담지 못한 통합공시 방법, 항목별 통합공시 요령,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sup>21)</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공시 매뉴얼은 ‘Ⅰ. 알리오 시스템 소개’, ‘Ⅱ. 시스템 이용 안내’, 그리고 ‘Ⅲ. 항목별 자료 작성방법’으로 구성된다. 매뉴얼은 각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공시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알리오 시스템 이용에 대한 안내 또한 공시담당자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매뉴얼은 공시담당자가 시스템상에서 공시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 공시제출 절차, 수정공시 절차, 공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개별 공시항목의 작성방법과 별개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 3. 공시항목과 분류체계 개편 현황

정부는 2007년에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 27개에 불과하던 공시항목은 2023년 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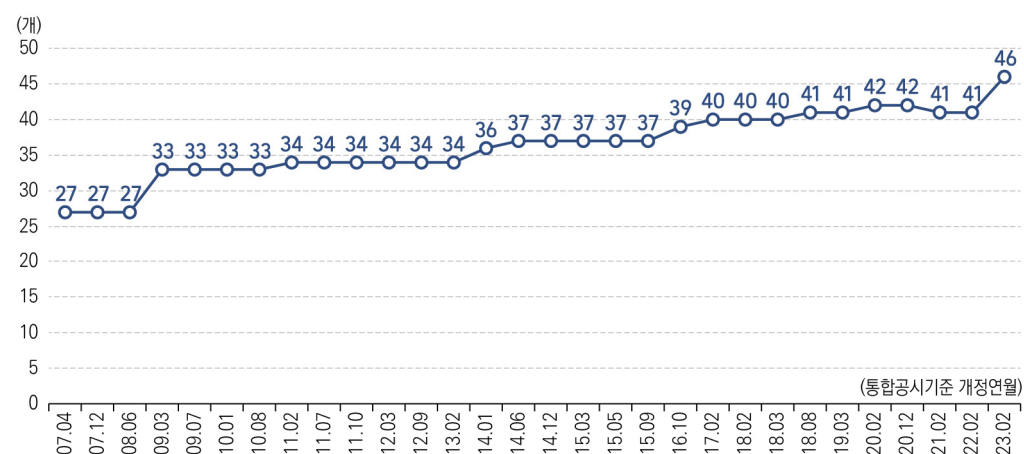
통합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항목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1~2개 정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09년과 2023년에 각각 6개, 5개의 공시항목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우선 2009년에는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현황,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이 공시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2023년에 공시항목이 크게 늘어난 것은 ESG 관련 공시의 강화와 분류체계 개편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2021년에는 실효성이 약화된 공시항목을 폐지

2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5조.

21)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이다.

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비해 1개의 공시항목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 항목이 신설되었고, ‘연간 출연 및 증여’, ‘안전관리 현황’, ‘기타 정보공개’ 항목이 폐지되었다.

〈그림 III-1〉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추이



자료: 각 연도 통합공시 매뉴얼

〈표 III-6〉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변동 현황

| 연월    | 공시항목     | 추가 혹은 삭제 항목                                                       |
|-------|----------|-------------------------------------------------------------------|
| 07.04 | 27개      | ■ 임직원수, 평균보수, 재무 현황, 외부 지적사항 등 27개 항목                             |
| 09.03 | 33개(+6개) | ■ (추가)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투자 집행내역, 노동조합 현황, 경영평가 지적사항, 감사 직무수행 평가결과  |
| 11.02 | 34개(+1개) | ■ (추가) 납세정보 현황                                                    |
| 14.01 | 36개(+2개) | ■ (추가) 12개 주요기관 상세 부채 정보, 복리후생비 관련 8대 항목                          |
| 14.06 | 37개(+1개) | ■ (추가) 감사보고서                                                      |
| 16.10 | 39개(+2개) | ■ (추가) 징계 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
| 17.02 | 40개(+1개) | ■ (추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
| 18.08 | 41개(+1개) | ■ (추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 20.02 | 42개(+1개) | ■ (추가) 안전관리 현황                                                    |
| 21.02 | 41개(-1개) | ■ (추가)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br>■ (삭제) 연간 출연 및 증여, 안전관리 현황, 기타 정보공개 |
| 23.02 | 46개(+5개) | ■ (추가) ESG 경영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구매실적, 이사회 등                          |

자료: 각 연도 통합공시 매뉴얼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는 2021년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원인은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 ESG 투자의 세계적인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거래소, 2020). ESG 경영 혹은 투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 용어는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가 발표한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고, 2006년 UN에서 금융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강조하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발표하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sup>22)</sup> 이처럼 ESG 개념은 예전부터 사용되는 용어였으나, 세계적인 관심이 ESG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2020년 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Blackrock)이 ESG 투자를 본격 선언했다. 이후 세계 유수의 기업과 펀드들이 ESG 경영 혹은 투자에 동참하면서 ESG는 단순한 사회적 담론을 넘어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관계부처 합동, 2021).

각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선 EU,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ESG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공시제도의 정비 등 ESG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 2021, 2022).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ESG 공시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민간기업은 사익을 추구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이외에 환경,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사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ESG 경영은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과거부터 이와 관련된 공시를 꾸준히

22) 한국거래소(KRX) ESG 포털의 ESG 등장배경을 참조했다.



히 진행해왔다. 즉 ESG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공공기관은 이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점차 늘려왔다. 가령 정부는 2009년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2015년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사항을, 2019년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항목들의 추가는 최근의 ESG 확산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항목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ESG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다. 정부는 이때부터 ESG 관련 공시항목 추가를 본격화했다. 2021년에는 먼저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 혹은 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새롭게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했다. 둘째, 당시까지 자율공시 사항이었던 봉사 실적이 정식 공시항목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정부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했다. 넷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되었다.<sup>23)</sup>

〈표 III-7〉 2021년 신설·보완된 ESG 공시항목

|         | 내 용                                                                                                                                                         |
|---------|-------------------------------------------------------------------------------------------------------------------------------------------------------------|
| 안전 및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li> <li>-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의 환경보호 노력을 공개</li> </ul> |
| 사회공헌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자율공시 항목이었던 봉사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li> <li>- 증여를 기부로 명칭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하여 제공</li> </ul>                 |
| 상생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조달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항목을 추가</li> </ul>                                              |
| 일·가정 양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 집 지원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li> </ul>                                               |

자료: 기획재정부(2021)

23) 2021년 ESG 공시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2021)를 토대로 작성했다.

정부는 2022년에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의 다양한 ESG 평가지표를 참고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ESG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첫째,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환경보호 항목의 공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둘째,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을 선도하도록 정부는 정보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 평가결과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했다.

셋째,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자체 감사부서 현황과 청렴도 평가 결과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ESG 공시항목 확대와 함께 더 이상 공시항목으로써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항목은 통합·재조정하는 등 전체 항목을 재검토했다. 먼저 사실상 자율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증권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 3개 사항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또한 국회, 감사원·주무부처,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경영실적과 감사직무실적 평가 결과를 통합했다.<sup>24)</sup>

---

24) 2022년 ESG 공시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2022a)를 토대로 작성했다.

〈표 III-8〉 2022년 신설·보완된 ESG 공시항목

|         | 내 용                                                                                                                                                                                                                                                                                                                          |
|---------|------------------------------------------------------------------------------------------------------------------------------------------------------------------------------------------------------------------------------------------------------------------------------------------------------------------------------|
| E(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을 대폭 확대</li> <li>- (에너지 사용량)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공시</li> <li>- (폐기물 발생량) 공공기관의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공시</li> <li>- (용수 사용량) 공공기관의 연간 용수(물) 사용량 공시</li> <li>-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공시</li> <li>-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 공시</li> </ul> |
| S(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li> <l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시</li> <li>- (인권경영)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공시</li> <li>- (동반성장 평가 결과) 중소기업벤처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공시</li> </ul>                                                                                          |
| G(지배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공시항목을 추가</li> <li>- (자체 감사부서 현황)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현황 공시</li> <li>- (청렴도 평가 결과)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li> </ul>                                                                                                                                           |

자료: 기획재정부(2022a)

전 세계적인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23년에도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 혹은 보완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은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 정보를 공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 범위를 외부배출(Scope 3)까지 확대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공시 항목이다. 향후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공공기관 ESG 공시 강화와 관련된 입법부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사회(S)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현황을 보여주는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지배구조(G)와 관련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전별 찬성 혹은 반대 현황을 보여주는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의 위원명단, 근거 규정, 회의록 등 현황을 보여주는 ‘ESG 운영위원회’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셋째,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된다. 공공기관은 이 항목을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한다. 정부는 국제동향 등을 보아가며 두 공시항목의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sup>25)</sup>

〈표 III-9〉 2023년 신설·보완된 ESG 공시항목

|         | 내 용                                                                                                                                                                                                                                                                                                                                                             |
|---------|-----------------------------------------------------------------------------------------------------------------------------------------------------------------------------------------------------------------------------------------------------------------------------------------------------------------------------------------------------------------|
| ESG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경영 현황)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li> </ul>                                                                                                                                                                                          |
| E(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와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li> <li>* (Scope 1) 제품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화석연료, 운송수단 사용시 등)</li> <li>* (Scope 2)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전기, 열, 물)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배출</li> <li>* (Scope 3)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협력사 등),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외부배출 또는 금융배출)</li> </ul> |
| S(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공시</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율 현황 공시</li> </ul>                                                                                                                                                                    |
| G(지배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출석률, 안건별 찬·반 현황 등) 공시</li> <li>- (ESG 운영위원회) ESG 추진체계와 관련 공공기관의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위원 명단, 근거 규정, 회의록 등) 공시</li> </ul>                                                                                                                                                   |

자료: 기획재정부(2023b)

25) 2023년 ESG 공시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2023b)를 토대로 작성했다.

ESG 관련 공시항목 등 신규 공시항목이 늘어나면서 기존 공시항목 분류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공시항목의 분류체계는 대항목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항목은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그리고 ‘정보공개’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대항목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일반현황’,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대항목은 비교적 소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항목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가령 ‘기관운영’ 대항목은 ‘임직원수’,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등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국민 등 공시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기획재정부, 2022a). 이에 정부는 2022년에 중분류를 신설했다. 2022년 공시항목 분류체계의 대항목은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그리고 ‘정보공개’로 2021년과 동일했다. 그런데 대항목과 항목 사이에 중분류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기관운영’ 대항목은 ‘인원’, ‘보수’, ‘ESG 경영’, ‘기타’ 중분류로 나뉘었다. 그리고 각 중분류는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분류체계상 중분류가 신설됨으로써, ‘기관운영’ 대항목에 속한 항목 수가 2021년 17개에서 2022년 20개로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자는 공시항목 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표 III-10〉 2022년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현황

| 2021년 이전            |                                                 | 2022년 이후            |          |                                                                                                |
|---------------------|-------------------------------------------------|---------------------|----------|------------------------------------------------------------------------------------------------|
| 대항목                 | 공시 항목                                           | 대항목                 | 중분류      | 공시 항목                                                                                          |
| 일반 현황               | • 일반현황                                          | 일반 현황               | -        | • 일반현황                                                                                         |
| 기관 운영               | •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현황, 직원 평균보수, 내부규정, 이사회 회의록 등 | 기관 운영               | 인원       | • 임직원 수<br>• 임원 현황<br>• 신규채용 현황<br>• 임직원 채용정보                                                  |
|                     |                                                 |                     | 보수       | • 임원 연봉<br>• 직원 평균보수<br>• 기관장 업무추진비<br>• 복리후생비<br>•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                               |
|                     |                                                 |                     | ESG 경영   | •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br>• 환경보호<br>• 사회공헌활동<br>• 인권경영<br>• 이사회 회의록<br>•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                     |                                                 |                     | 기타       | • 임원 국외출장 내역<br>• 노동조합 관련 현황<br>• 내부규정<br>• 징계 현황<br>•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
| 주요 사업<br>및<br>경영 성과 | •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 주요 사업<br>및<br>경영 성과 | 재무성과     | • 요약 재무상태표<br>• 요약 손익계산서<br>• 수입·지출현황<br>• 자본금 및 주주 현황<br>• 장단기 차입금 현황<br>• 감사보고서<br>• 납세정보 현황 |
|                     |                                                 |                     | 사업 및 투자  | • 주요사업<br>• 투자집행내역<br>•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
|                     |                                                 |                     | 중장기 재무관리 | • 경영부담 비용추계<br>• 중장기 재무관리계획<br>•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
| 대내외<br>평가           | •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 대내외<br>평가           | -        | • 경영 평가결과<br>• 동반성장 평가결과<br>• 청렴도 평가결과<br>• 국회 등 외부평가<br>•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
| 정보 공개               | • 계약정보, 연구보고서 등                                 | 정보 공개               | -        | • 계약정보<br>• 연구보고서                                                                              |

자료: 기획재정부(2022a)

그렇지만 2022년 공시항목 분류체계의 소규모 개편은 공공기관 공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에 기존의 분류체계를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대항목(5개) - 항목(41개) - 세항목(99개) - 세세항목(126개)’은 ‘대분류(4개) - 중분류(15개) - 항목(46개) - 세항목(98개) - 세세항목(118개)’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로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대항목이 ‘기관운영’, ‘ESG 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대분류로 개편되었다. 각 대분류와 대항목의 세부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기존의 ‘일반현황’과 ‘기관운영’ 대항목이 ‘기관운영’ 대분류로 통합되었다.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항목은 ‘경영성과’ 대분류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대내외 평가’와 ‘정보공개’ 대항목은 ‘대내외 평가 등’ 대분류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ESG 운영’ 대분류는 기존의 5개 대항목에서 ESG와 관련된 항목들을 모아 새롭게 추가되었다. 2022년에 ‘기관운영’ 대항목의 중분류 중 하나로 ‘ESG 경영’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에는 ‘기관운영’ 대분류와 동일한 수준의 ‘ESG 운영’ 대분류가 신설되었다. 이는 ESG 공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대항목 아래 10개 중분류를 대분류 아래 15개 중분류로 세분화했다. 2022년에 분류체계상 중분류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국민 등 정보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 항목 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중분류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했다. 가령 ‘ESG 운영’ 대분류는 ‘ESG 현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중분류로 구분된다. 이때 ‘ESG 현황’ 중분류는 공공기관의 ESG 추진체계 및 현황 등 ESG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항목을 포함한다. 반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중분류는 각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분류체계가 체계적으로 세분화됨으로써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ESG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세부 활동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II-11〉 2023년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현황

| 현 행                       |                        | 개 편                |                    |                        |
|---------------------------|------------------------|--------------------|--------------------|------------------------|
| 대항목                       | 항 목(41)                | 대분류                | 중분류                | 항 목(46)                |
| I.<br>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I.<br>기관운영         |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                           | 2. 임직원 수               |                    | 인력관리               | 2. 내부규정                |
|                           | 3. 임원현황                |                    |                    | 3. 임직원 수               |
|                           | 4. 신규채용 현황             |                    |                    | 4. 임원현황                |
|                           | 5. 임·직원 채용정보           |                    |                    | 5. 신규채용 현황             |
|                           | 6. 임원연봉                |                    |                    | 6. 임·직원 채용정보           |
|                           | 7. 직원 평균보수             |                    |                    | 7. 퇴직 임·직원 재취업현황       |
|                           | 8. 기관장 업무추진비           |                    |                    | 8. 징계현황                |
|                           | 9. 복리후생비               |                    |                    | 9. 임원 국외출장내역           |
|                           | 10.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                    | 보수관리               | 10. 임원연봉               |
|                           | 1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                    |                    | 11. 직원 평균보수            |
|                           | 12. 환경보호               |                    | 복리후생               | 12. 기관장 업무추진비          |
|                           | 13. 사회공헌활동             |                    |                    | 13. 복리후생비              |
|                           | 14. 인권경영               |                    | 노동조합               | 14.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
|                           | 15. 이사회 회의록            |                    |                    | 15. 노동조합 관련현황          |
|                           | 1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                    | 소송 및 자문            | 16.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
|                           | 17. 임원 국외출장 내역         |                    |                    | 17. ESG 경영 현황 (신설)     |
| II.<br>기관운영               | 18. 노동조합 관련현황          | II.<br>ESG<br>운영   | ESG 현황             | 18. 환경보호               |
|                           | 19. 내부규정               |                    | E(환경)              | 19.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
|                           | 20. 징계현황               |                    | S(사회)              | 20. 사회공헌 활동            |
|                           | 21.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                    |                    | 21. 인권경영               |
|                           | 22. 요약 재무상태표           |                    |                    | 2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
|                           | 23. 요약 손익계산서           |                    |                    |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
|                           | 24. 수입·지출현황            |                    |                    | 24. 장애인 고용현황 (신설)      |
|                           | 25. 자본금 및 주주현황         |                    | G<br>(지배구조)        | 25. 구매실적 (신설)          |
|                           | 26. 장단기 차입금현황          |                    |                    | 26. 이사회 (신설)           |
|                           | 27. 감사보고서              |                    |                    |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
|                           | 28. 납세정보 현황            |                    |                    | 28. 청렴도 평가결과           |
|                           | 29. 주요사업               |                    | 재무성과               | 29. 요약 재무상태표           |
|                           | 30. 투자집행내역             |                    |                    | 30. 요약 손익계산서           |
|                           | 3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                    |                    | 31. 수입·지출현황            |
|                           | 32. 경영부담 비용추계          |                    |                    | 32. 자본금 및 주주현황         |
|                           | 3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                    | 33. 장단기 차입금현황          |
| III.<br>주요사업<br>및<br>경영성과 | 34. 12개 주요기관의 상세 부채 정보 | III.<br>경영성과       | 사업 및 투자            | 34. 감사보고서              |
|                           | 35. 경영 평가결과            |                    |                    | 35. 납세정보 현황            |
|                           | 36. 동반성장 평가결과          |                    |                    | 36. 주요사업               |
|                           | 37. 청렴도 평가결과           |                    |                    | 37. 투자집행내역             |
|                           | 38. 국회 등 외부평가          |                    | 중장기<br>재무관리        | 38. 투자 및 출자·출연현황       |
|                           |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                    | 39. 경영부담 비용추계          |
|                           | 40. 계약정보               |                    |                    | 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                           | 41. 연구보고서              |                    |                    | 41. 12개 주요기관의 상세 부채 정보 |
|                           |                        |                    | IV.<br>대내외<br>평가 등 | 42. 경영 평가결과            |
|                           |                        |                    |                    | 43. 국회 등 외부 평가         |
|                           |                        |                    |                    | 4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                           |                        |                    |                    | 45. 계약정보               |
|                           |                        |                    |                    | 46. 연구보고서              |
| IV.<br>대내외<br>평가          |                        | IV.<br>대내외<br>평가 등 | 대내외 평가             |                        |
|                           |                        |                    | 정보공개               |                        |
| V.<br>정보<br>공개            |                        |                    |                    |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2023b)



## 4. 향후 고려사항

통합공시제도를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통합공시 항목은 2007년 27개에서 2023년 46개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므로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ESG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다수의 ESG 항목을 신설하고,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공시 강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ESG 공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민간부문의 ESG 공시제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2023년 6월 26일에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구체적으로 IFRS S1과 IFRS S2 - 을 발표했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이다. 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표 III-12〉 IFRS S1과 IFRS S2 개요

|                         |                                                                                                                                                                                                                                                     |
|-------------------------|-----------------------------------------------------------------------------------------------------------------------------------------------------------------------------------------------------------------------------------------------------|
| <b>기준명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li> <li>-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li> </ul>    |
| <b>IFRS S1 일반 요구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li> </ul>                                                                                                                               |
| <b>IFRS S2 기후 관련 공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규정 (TCFD* 권고안 통합)</li> <li>*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li> </ul>                                                                 |
| <b>시행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li> </ul>                                                                                                                                                                  |
| <b>주요 경과규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S1·S2 기준 적용 첫째, 다음 경과규정 제공</li> <li>① 비교정보의 미공시 허용</li> <li>②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는 미공시 허용</li> <li>③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가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에 공시 허용</li> <li>④ Scope 3 GHG 배출량 정보에 대한 미공시 허용</li> </ul> |
| <b>주요 발표문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S1 및 S2 기준서 본문 및 부록(적용 지침 포함)</li> <li>- IFRS S1 및 S2 결론도출근거</li> <li>- IFRS S1 및 S2 부속 지침(예시지침 및 사례, S2 산업기반 이행 지침 포함)</li> </ul>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23)

기업이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와 관련된 위험·기회에 대하여, IFRS S1과 IFRS S2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정보공개가 필요한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가령 IFRS S1에 따르면, 기업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를 식별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IFRS S2의 전략 측면에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가치사슬, 전략·의사결정,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전략·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sup>26)</sup>

26) IFRS S1과 IFRS S2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2023)을 참조해 작성했다.

〈표 III-13〉 IFRS S1과 IFRS S2 핵심요소

|                | IFRS S1                                                                                                                                                                                                                                                                                                                     | IFRS S2                                                                                                                                  |
|----------------|-----------------------------------------------------------------------------------------------------------------------------------------------------------------------------------------------------------------------------------------------------------------------------------------------------------------------------|------------------------------------------------------------------------------------------------------------------------------------------|
| <b>거버넌스</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li> <li>-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li> <li>-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공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모니터링·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의 역할</li> </ul>                                            |
| <b>전략</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li> <li>-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재무상태·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회복력과 관련된 정보</li> <li>- 예컨대 회복력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가치사슬, 전략·의사결정,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전략·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li> </ul> |
| <b>위험관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기업 전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방식</li> </ul>          |
| <b>지표 및 목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SSB 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 식별을 위해 <b>지침*</b>의 고려 및 관련된 요구사항 따름</li> <li>* SASB 기준(필수적 고려), CDSB 체계 적용 지침, 투자자 중심의 기준 제정기관의 가장 최신 발표내용 등(선택적 고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특성과 무관한 산업전반 지표, 산업 특성별로 달라질 수 있는 산업기반 지표, 그리고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와 목표의 진척도</li> </ul>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23)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회계기준으로 IFRS를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ESG 관련 공시기준으로 IFRS S1과 IFRS S2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기업 규모와 ESG 경영에 대한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공공부

문도 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향후 ESG 공시와 관련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제시하는 사항 중에서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항목이나 내용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적정 항목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둘째, 공공부문이 민간에 공개하는 정보 중에서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통합공시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과 유사하게 다른 부처들도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중에 통합공시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ESG의 환경(E)과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은 환경부가 지정한 항목에 대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sup>27)</sup>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은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 환경 분야에서 19개 항목(의무항목 8개, 자율항목 11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정보 중에는 통합공시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와 일치하는 항목들이 있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 중에서 통합공시에 추가될 만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회(S) 및 거버넌스(G)에 대한 공시정보도 마찬가지다.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사회 혹은 거버넌스 관련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통합공시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 혹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ESG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겠다.

〈표 III-14〉 공공기관의 환경정보 공개 현황

| 구분        | 내 용                         | 의무/자율 | 통합공시 항목 포함 여부 |
|-----------|-----------------------------|-------|---------------|
| 기업 개요     | - 사업 현황                     | 의무    |               |
|           | - 환경 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자율    |               |
| 녹색경영 시스템  | - 비전, 전략, 방침, 목표            | 의무    |               |
|           | -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 의무    |               |
| 자원/에너지    | -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자율    |               |
|           | - 원부자재 사용량                  | -     |               |
|           | -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 의무    | ○             |
|           | - 에너지 사용량                   | 의무    | ○             |
|           | -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자율    |               |
| 온실가스/환경오염 | -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자율    |               |
|           | -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자율    | ○             |
|           | -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자율    |               |
|           | -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자율    |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자율    |               |
|           | -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 의무    | ○             |
|           | - 화학물질 배출량                  | 자율    |               |
|           | - 토양, 소음진동, 악취 관리 현황        | -     |               |
|           | - 녹색제품,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녹색제품 서비스  | - 친환경 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     |               |
|           | -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 | -     |               |
|           | -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의무    | ○             |
|           | -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
|           | -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
| 사회윤리적 책임  | -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의무    | ○             |
|           | -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자율    |               |
|           | - 이해관계자 환경 정보 요청 대응 현황      | 자율    |               |

주: 정보공개 항목은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등 기업 혹은 기관이 속하는 업종 유형에 따라서 상이함. 위의 표는 공공행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셋째,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p>28)</sup> 내용 중 통합공시에 추가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보통 통합공시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통합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국전력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통합공시 항목에 새롭게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ESG 공시 강화 차원에서 2023년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이 항목의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2024년까지 ‘ESG 경영 현황’을 자율공시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유형,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SG 경영 현황’ 항목은 ESG 경영보고서의 형태로 공시된다. 여기서 ESG 경영보고서는 각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하여 기관 개요, ESG 경영 목표 및 전략, ESG 추진체계, ESG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시 말해 ESG 경영보고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 경우, 공공기관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3c). 이런 이유로 향후에 ESG 경영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SG 경영보고서에는 현재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새로운 ESG 공시항목을 찾는 과정에서 ESG 경영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항목을 바탕으로 ESG 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는 ESG와 관련된 통합공시 항목을 모두 ESG 경영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28) 공공기관은 이를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등 다른 이름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 〈표 Ⅲ-15〉 ESG 경영보고서 작성 예시

1. 기관 개요
  - \* 경영진 및 기관 소개, 조직 및 네트워크, 사업내용, 재무정보 등
2. ESG 경영 목표
  - \* 기관장 의지, 핵심 목표 및 가치, ESG 장단기 및 당해 연도 목표 등
3. ESG 경영 전략
  - \* ESG 경영 역량 진단, ESG 장단기 추진전략, 리스크 관리 등
4. ESG 추진체계
  - \* ESG 경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추진 조직,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 소통채널 등
5. ESG 추진성과
  - \* ESG 각 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
6. 평가
  - \* 경영 성과 및 리스크에 미친 영향, 사회적 기여, 향후 과제 등

자료: 기획재정부(2023c)

## IV. 통합공시제도: ② 알리오 시스템

### 1. 알리오 시스템 의의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일명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sup>29)30)</sup>

〈표 IV-1〉 알리오를 통한 통합공시 근거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④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

통합공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사전적 공개, 원문정보공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합공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통합공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등 다른 정보공개제도보다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리오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알리오 접속자는 2017년 약 330만 명에서 2022년 약 1,200만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향후에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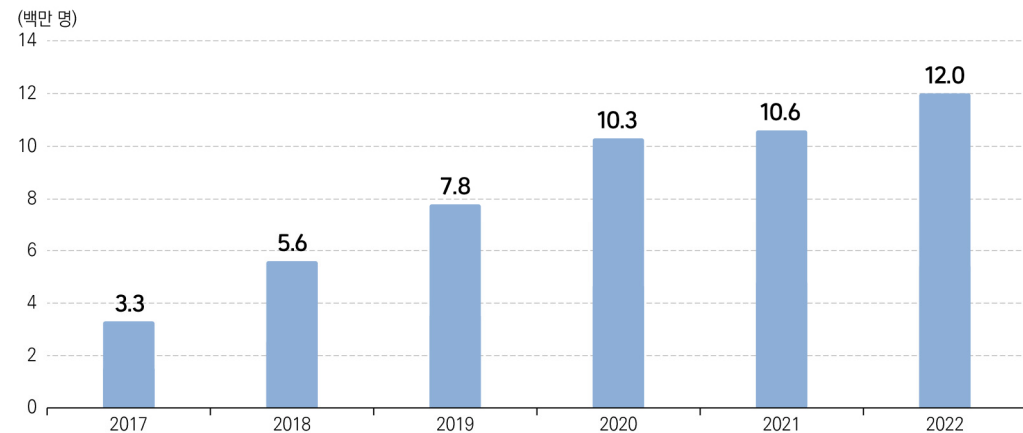
29) 알리오 홈페이지의 알리오 소개를 참조하여 작성함.

30) 한편 잡알리오(JOB-ALIO)는 46개 공시항목 중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채용정보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알리오플러스(ALIOPLUS)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고유 사업 및 서비스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공공기관 통합서비스이다(잡알리오와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의 소개를 참조하여 작성함).



기관의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를 방문하는 국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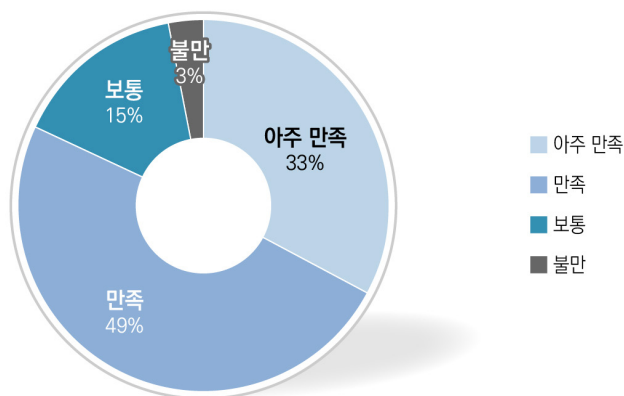
〈그림 IV-1〉 알리오 연간 방문자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알리오를 통해 제공하는 통합공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22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알리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아주 만족’과 ‘만족’의 비율이 각각 33%, 49%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였고, 알리오 서비스에 ‘불만’을 나타낸 응답자 비율은 3%에 불과했다.

〈그림 IV-2〉 알리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주: 2022년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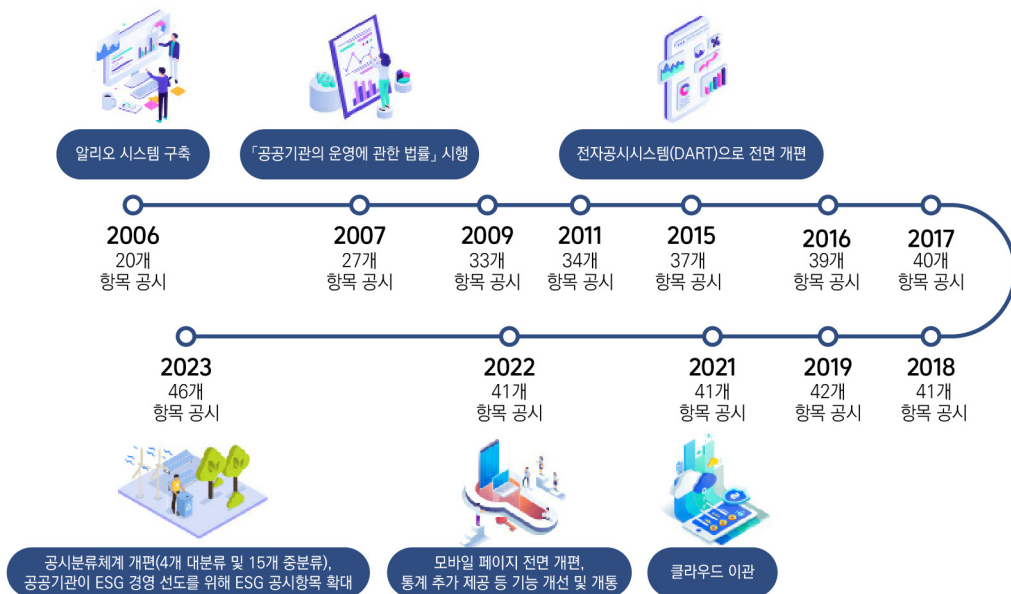
## 2. 알리오 시스템 변천

2005년 5월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정부는 약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PUBMIS(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인사·재무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에게 공개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는 임원 현황, 주요 사업,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등 20개 항목이었다. PUBMIS가 구축되어 일반에게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몇 가지 미흡사항이 지적되었다. 먼저 국민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직원의 연간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국민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명칭인 PUBMIS가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시스템 명칭이 통합공시제도를 널리 알리고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2월에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명칭을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로 변경한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였다. 우선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사이트에 대한 명칭 공모를 실시해 시스템의 명칭을 PUBMIS에서 알리오로 변경했다. 알리오라는 명칭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PUBMIS에 비해서 친숙하고 기억하기 쉽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알리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6월에 공공기관의 2006년 경영정보(27개 항목)가 알리오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기존 20개 공시항목에 새롭게 7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직원의 연간 평균보수, 장단기 차입금 등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항이 공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항목들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오 시스템에 접속할 유인을 제공했다.<sup>31)</sup>

알리오 시스템은 이후에도 수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아래 그림은 그동안 알리오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2015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도입과 2022년 모바일 페이지 전면 개편 등 사용자 친화적 개편 현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그림 IV-3〉 알리오 시스템 변천



자료: 알리오 홈페이지

2015년 4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알리오 시스템을 민간 기업 공시시스템 수준으로 전면 개편했다.<sup>32)</sup> 민간의 전자공시 방식인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sup>33)</sup>의 도입이 개편의 중심에 있었다. DART는 공공기관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국민 등 정보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31) 위에서 서술한 PUBMIS 및 알리오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공기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2007.12.17.)’을 참조해 작성했다.

32) 먼저 2014년 10~12월 DART 방식의 알리오 시스템을 개발(서버구축 및 SW 개발)했다. 2015년 1~3월 시스템 테스트 등을 통해 오류를 수정했고,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2015년 4월에 DART 방식을 이용해 1분기 정기공시 항목 자료를 입력했다. 이는 4월 30일에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33)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DART 도입에 따른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관별 통합보고서 형식(DART 방식)으로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웹화면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클릭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DART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 공시자료를 통합한 정기보고서를 추가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째, 공시자료에 대한 다양한 조건별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했다. 기존 시스템에는 기관 검색 기능만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기관별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날짜별·유형별 검색과 첨부파일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셋째,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1개 항목 단위로만 통계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 여러 항목의 통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시스템 개편 이후,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기공시 자료를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개편 이전, 정보이용자는 일부 통계자료만 엑셀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알리오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정보이용자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정기공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알리오 개편 이후, 공공기관은 공시한 모든 보고서를 축적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일부 통계자료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공시자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이후, 과거 공시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공시자료의 수정 및 변경 이력까지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sup>34)</sup>

---

34)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2015)를 참조해 작성했다.

〈표 IV-2〉 2015년 알리오 시스템 개편 현황

| 구분   | 기존                                                                                                          | 개편                                                                                                                                     |
|------|-------------------------------------------------------------------------------------------------------------|----------------------------------------------------------------------------------------------------------------------------------------|
| 공시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 항목별(37개) 자료 제공</li> <li>* 국민이 웹화면에서 항목단위로 하나씩 클릭·확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통합 정기보고서 추가제공</li> <li>* 전체 공시항목을 보고서 형태로 한 번에 확인</li> <li>* 기존 항목별 자료확인 방식 유지</li> </ul> |
| 검색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검색 기능만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검색 기능 제공</li> <li>* 기관·보고서·날짜·유형별 검색 및 첨부파일 검색 가능</li> </ul>                                |
| 통계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항목 단위로만 통계 조회</li> <li>* 예) '자본'과 '부채' 통계를 각각 조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항목 통계를 한꺼번에 조회</li> <li>* 예) '자본'과 '부채' 통계를 동시 조회</li> </ul>                               |
| 전자파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통계자료*만 엑셀파일 제공</li> <li>* 임직원수, 임원연봉, 대차대조표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자료 이외에도 모든 정기공시 자료의 전자파일(pdf 또는 엑셀) 제공</li> </ul>                                           |
| 과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공시자료는 금년도에 조회 곤란</li> <li>* 일부 통계자료만 과거 2개년도 자료 조회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리오 개편 이후 공시한 모든 자료를 축적·제공</li> <li>* 공시자료 수정·변경 이력 확인가능</li> </ul>                           |

자료: 기획재정부(2015)

2022년 1월 알리오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다. 개편의 주안점은 알기 쉬운 공시 정보, 편리한 홈페이지, 강화된 모바일 서비스, 문서편집기 개선 등 사용자 친화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첫째, 정보이용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홈페이지의 메뉴를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공시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메뉴 구조를 개선했다. 공시 현황, 수시공시, 주요 통계 등은 종합 페이지를 신설했으며, 홈페이지 화면 구성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변경했다. 그리고 표, 차트, 그래프 등 시각화 요소를 늘려 공시정보의 가독성을 높였다.

둘째, 국민 등 정보이용자가 알리오를 통해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과 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알리오를 방문하는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중앙에 통합검색 창을 배치하고 상세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사람들이 알리오에서 자주 찾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기검색어 기능을 신설했다. 한편 통계분석을 단일항목 통계와 복합통계로 구분하고 기관 간 비교 분석, 다운로드, 그래프 기능 등을 확충했다. 특히 단일항목 통계가 추가되어 하나의 공시항목에 대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5년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알리오의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했다. 과거에 대부분의 정보이용자들은 PC를 통해 알리오에 접속해 원하는 공시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편리하게 개편하고, PC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확대했다. 모바일 서비스 강화 이후, 정보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공시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시담당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동안 알리오 시스템의 개선은 주로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반면 공시담당자가 이용하는 문서편집기 등 입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다. 통합공시 항목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시담당자들의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공시입력 시스템은 그들의 주된 불만사항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시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서편집기 등 시스템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2022년 개편을 통해 공시보고서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다. 공시담당자는 이제 과거 4년 동안의 공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담당자는 당해 연도의 공시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입력한 공시정보의 자동합계 기능과, 항목별 입력정보의 속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기능이 신설되었다. 향후 공시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35)</sup>

---

35) 2022년 알리오 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은 기획재정부(2022c)를 참조해 작성했다.

〈표 IV-3〉 2022년 알리오 시스템 개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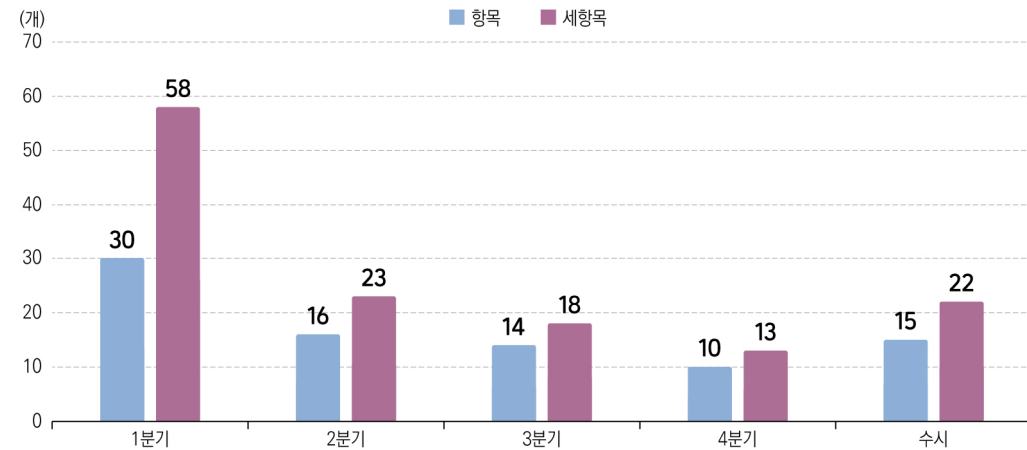
|                   | 주요 내용                                                                                                                                                                                                                                                                                                   |
|-------------------|---------------------------------------------------------------------------------------------------------------------------------------------------------------------------------------------------------------------------------------------------------------------------------------------------------|
| 알기 쉬운<br>공시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전체 메뉴를 이용자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공시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li> <li>- 공시 현황, 수시공시, 주요 통계 등 핵심 콘텐츠는 전체를 조망·정리하는 페이지를 신설함</li> <li>- 최신 디자인 흐름을 고려한 단순·간결한 화면 구성, 주요 페이지별 시각화 요소를 확대하여 공시정보의 가독성을 높임</li> </ul>                    |
| 편리한<br>홈페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중앙에 통합검색 창을 배치하고 상세검색 기능 추가, 최근 검색어·인기 검색어를 신설하는 등 알리오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함</li> <li>- 공공기관 정원·보수 등 관심 있는 주요 통계 항목을 확대하고 그래프와 차트를 대폭 보강하여 정보 분석을 강화함</li> <li>- 통계분석을 '단일항목 통계'와 '복합 통계'로 구분하고 기관간 비교분석, 다운로드, 그래프 제시 기능 등을 확충함</li> </ul> |
| 강화된<br>모바일<br>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을 편리하게 개편하고, PC와 동일한 수준으로 콘텐츠를 확대하여 모바일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시정보를 찾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함</li> <li>- 통계 그래프 제공, 통합 검색(상세·조건검색 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등 주요 기능을 추가하여 모바일 서비스 활용도를 향상시킴</li> </ul>                                                              |
| 문서편집기<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문서편집기(DART)를 개선하여 공시업무의 부담을 완화함</li> <li>- 과거 4개년도 통계를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하도록 하고, 자동 합계, 부분합 산출, 오류 검증 등의 기능을 신설함</li> </ul>                                                                                                                        |

자료: 기획재정부(2022c)

### 3. 알리오를 통한 통합공시 현황

먼저 국민 등 정보이용자는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이 통합공시기준에 의거해 공시하고 있는 항목의 개수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항목은 총 46개이다. 이 중에서 30개는 1분기, 16개는 2분기, 14개는 3분기, 10개는 4분기, 15개는 수시 공시한다. 즉 1분기에 공시하는 항목이 가장 많고, 4분기에 공시하는 항목이 가장 적다. 각 분기에 공시하는 항목의 개수와 수시 공시하는 항목의 개수 합이 46개를 초과하는데, 이는 1년에 여러 번 공시하는 항목(예: 임직원 수는 분기별로 연 4회 공시)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항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IV-4〉 알리오 공시 현황



자료: 알리오(2023년 기준)

그리고 알리오는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시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우선 기관별 공시를 통해 특정 공공기관의 모든 공시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 유형과 주무부처, 그리고 소재 지역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또는 기관명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정보이용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반면 항목별 공시를 통해서 정보이용자는 특정 항목에 대한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정보이용자는 대분류-중분류-공시항목-세항목-수시/정시-자료유형-공시시기를 선택해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어서 기관 유형, 주무부처,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재 지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특정 공공기관의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요 수시공시가 있다. 주요 수시공시는 채용정보, 임원모집공고, 입찰공고 등 주요 수시항목의 현황 및 통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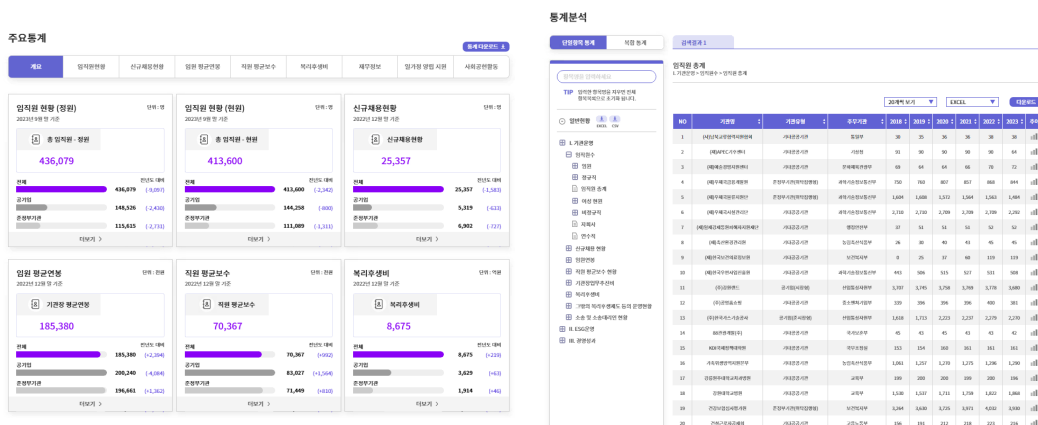




여준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주요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전체 공공기관의 현황은 통계분석 기능을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통계분석 기능은 단일항목 통계와 복합통계로 구분된다. 먼저 단일항목 통계를 살펴보자. 가령 ‘기관장 업무추진비’ 항목을 선택하면, 정보이용자는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운받아 가공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합통계를 살펴보면, 정보이용자는 공공기관 유형(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들 중 검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항목수준별(항목-세항목-세부항목)로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이용자는 기관 유형에서 시장형 공기업, 주무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선택한 후, 여기서 다시 발전 공기업 5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어서 수입지출 현황(항목)-고유사업(세항목)-지출합계(세부항목)와 법인세정보(항목)-납부내역(세항목)-결정세액(세부항목)을 선택하면, 알리오의 최근 5년간 5개 발전 공기업의 지출합계와 결정세액 내역을 제공한다.

〈그림 IV-6〉 알리오의 주요 통계, 통계분석



자료: 알리오

## 4. 향후 고려사항

알리오 시스템은 2006년 12월에 구축되었다. 이후 알리오 시스템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도입, 사용자 친화성 강화 등 수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치며, 국민을 비롯한 정보이용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실제로 알리오 접속자는 2017년 약 330만 명에서 2022년 약 1,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알리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등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알리오 시스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항목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이용자는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시한 정보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 알리오 시스템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이용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따라서 알리오 시스템의 개선은 정보 수요자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스템 개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정보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하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 입장에서 알리오 편집기 등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한다.

〈그림 IV-7〉 알리오시스템 구성



자료: 기획재정부(2023c)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는 알리오 편집기를 이용해 공시정보를 입력한다. 알리오 편집기는 제출인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기획재정부, 2023c). 아래는 공시항목 중 ‘임직원 수’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예시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국민이 접속하는 알리오에 비해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림 IV-8〉 알리오 시스템상 공시항목 입력 및 제출 절차(일부)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 ① 신규 작성이 아닌 공시를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정오표를 삽입하여 작성
- ② 작성하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
- ③ 모든 보고서 작성 시 단위를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④ 색이 들어가는 영역은 자동계산됨

- ① 제출자 시스템→제출현황→정기공시/수시공시에서 제출
- ② 제출하고자 하는 공시항목을 선택
- ③ 편집기로 작성한 전송파일(.art)을 첨부하고 제출완료 버튼을 누름

자료: 기획재정부(2023c)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알리오 편집기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 알리오 개편을 통해 과거자료 불러오기, 자동 합계, 부분합 산출, 오류검증 등의 기능을 신설했다. 이는 공시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예를 들어 개편 이전에 공시담당자는 과거 4년 동안의 자료도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공시담당자는 당해 연도 자료만 입력하면 되며, 더 이상 과거자료를 수기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표 IV-4〉 2022년 알리오 편집기 개선 현황

| 기능        | 개선 내용                                                                           |
|-----------|---------------------------------------------------------------------------------|
| 과거자료 불러오기 | - 과거 또는 전년도 공시 보고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과거 4개년도 입력 수치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최근 1개년도만 신규 입력토록 조치 |
| 자동합산      | - 입력한 수치정보 자동합계(부분합 등) 산출 기능                                                    |
| 오류검증      | - 항목별 입력정보의 속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                                               |

자료: 기획재정부(2022c)

정부의 노력으로 알리오 편집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만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알리오 편집기의 기능 향상 등 정보 공급자 측면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알리오 편집기 등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접속해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은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알리오 홈페이지에 비해서 품질이나 성능이 뒤떨어진다. 알리오 편집기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시정보 제출자 시스템의 품질과 기능을 제고해야 하겠다.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부는 공시담당자의 편의성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공공기관 공시담당자의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항목 작성 및 제출 절차의 자동화, 간소화를 구현해 각 공공기관의 공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V. 통합공시제도: ③ 통합공시점검

### 1. 통합공시점검 의의

정부는 통합공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로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검 결과 드러난 오류 사항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은 이미 공시된 내용을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경우, 공시정보의 이력 관리를 위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표 V-1〉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1): 공시 책임자의 지정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3조(경영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은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로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4조(공시자료의 점검·확인)**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공공기관은 기 공시된 내용을 수정·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공시 책임자 지정, 그리고 그들의 공시자료 점검·확인만으로 공시자료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시점검제도를 도입했다. 통합공시점검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확인 및 검증 결과,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표 V-2〉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2):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5조(공시점검 및 후속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의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통합공시점검은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당시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복리후생 관련 공시 정보가 알리오를 통해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2014년 초에 최초로 실시했다(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이후 통합공시점검은 수차례의 제도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예컨대 제도 도입 이후 연 1회 실시되던 공시점검은 2018년도 점검부터 연 2회 실시되기 시작했고, 2021년도 점검 이후 현재까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연도별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그간의 변동 사항을 살펴본다.

〈표 V-3〉 연도별 통합공시점검 주요 변동사항

| 연도   | 주요 내용                                                                                                                                                                                                                                                                                                                                     |
|------|-------------------------------------------------------------------------------------------------------------------------------------------------------------------------------------------------------------------------------------------------------------------------------------------------------------------------------------------|
| 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불성실공시를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위반 수준에 따라 별점을 상이하게 부과하도록 별점체계를 전면 개편함</li> </ul>                                                                                                                                                                                  |
|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 위주의 공시점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에 우수공시기관 선정 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함</li> <li>*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는 우수공시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li> </ul>                                                                                                                                  |
| 20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실시하던 공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공시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함</li> <li>-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간 Q&amp;A 코너 개설, 공시 미흡 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li> <li>* 무벌점 기관 → 무벌점 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li> </ul>                                                   |
|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불성실공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여 공시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li> <li>-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 수준에 따른 별점체계를 정비함</li> <li>-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통합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기관과 신규 지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매뉴얼 교육, 멘토 지정 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li> </ul>    |
| 2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함</li> <li>-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시오류를 점검하는 ‘온라인 점검단’ 제도를 신설함</li> <li>- 온라인 점검단은 다양한 직업을 갖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공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li> <li>- 공시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공시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공시향상기관을 지정함</li> </ul> |
|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이외에 신규 지정·소규모·불성실공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교육과정을 신설함</li> <li>- 통합공시 오류사례집을 발간하고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해 공공기관의 공시역량 강화를 모색함</li> <li>- 공시담당자를 위한 Q&amp;A 커뮤니티를 신설하고, 통합공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멘토-멘티 매칭을 확대</li> <li>- 멘토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함</li> </ul>                                        |

자료: 기획재정부(2018, 2022b),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 2. 통합공시점검 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모든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통합공시 대상기관은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즉 통합공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점검을 받는다. 가령 정부는 2023년에 347개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때 347개 공공기관은 모두 통합공시점검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들 중의 일부(15개)도 모기관과 별도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sup>36)</sup> 공시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부설기관은 예산, 정원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이들 부설기관에 대해서 모기관과 별도로 통합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통합공시점검의 대상이 되는 부설기관에 속한다.

---

36)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들 중의 일부는 모기관과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다.

〈표 V-4〉 2023년 공시점검 대상 부설기관 현황

| 기관명              | 기관 유형            | 주무부처      | 상위기관        |
|------------------|------------------|-----------|-------------|
| KDI국제정책대학원       | 기타공공기관           | 국무조정실     | 한국개발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과학연구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br>일산병원 | 준정부기관<br>(위탁집행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극지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원자력의학원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기타공공기관           | 교육부       | 서울대학교병원     |
| 서울요양원            | 준정부기관<br>(위탁집행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세계김치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식품연구원     |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안전성평가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화학연구원     |
| 육아정책연구소          | 기타공공기관           | 국무조정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준정부기관<br>(위탁집행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통합공시점검을 도입한 이후, 2017년 점검까지 정부는 연 1회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 2회 점검을 실시했다. 상반기에는 연 1회 공시항목 등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점검항목이 아닌 항목 위주로 점검을 했다(기획재정부, 2019). 하지만 공시항목이 늘어나고 높은 품질의 공시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 2회 점검만으로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매년 2차례 상·하반기에 실시하던 공시점검을 2021년도 점검부터 매년 3차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 2022b).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보통 1차 점검은 5~8월, 2차 점검은 10~12월, 3차 점검은 다음 연도 1~3월에 수행된다.

각 회차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점검항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는 항목별 점검표와 공시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기획

재정부는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함께 각 공공기관의 공시정보가 정확한지 증빙자료와 공시내용을 비교해 점검한다. 셋째,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개별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각 공공기관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함께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공공기관의 이의 제기를 수용할지 결정한다. 다섯째, 기획재정부는 최종 점검결과를 개별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이와 같은 점검절차는 매 회차에 동일하게 반복된다. 1~3차 공시점검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표 V-5〉 통합공시점검 절차



주: 주로 1차 점검은 5~8월, 2차 점검은 10~12월, 3차 점검은 1~3월에 진행됨

자료: 기획재정부(2022b)

한편 2023년에 공시점검 지원기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22년까지 공시점검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3년도 점검부터 공시점검 지원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시점검 지원기관은 공시점검 항목 및 점검방식, 시기, 절차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공시점검 지원기관은 연도별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관리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23년에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제로 실시했고, 통합공시와 관련된 오류사례 집37)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공시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37)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2023)을 참고하기 바란다.

## 〈표 V-6〉 공시점검 지원기관 근거 규정

|                                                                                                                                                                                                                                                                                                                              |
|------------------------------------------------------------------------------------------------------------------------------------------------------------------------------------------------------------------------------------------------------------------------------------------------------------------------------|
| <p><b>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의1(공시점검 지원기관)</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공시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시점검 항목 및 점검방식, 시기, 절차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p> <p>③ 공시점검 지원기관은 연도별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관리한다.</p> |
|------------------------------------------------------------------------------------------------------------------------------------------------------------------------------------------------------------------------------------------------------------------------------------------------------------------------------|

정부는 노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공시점검지원기관을 활용한 공시점검제도 이외에 온라인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점검단은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회사원, 학생, 취업생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일반국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점검단으로 선발되면, 공시정보의 모니터링 및 통합공시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온라인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점검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해 점검단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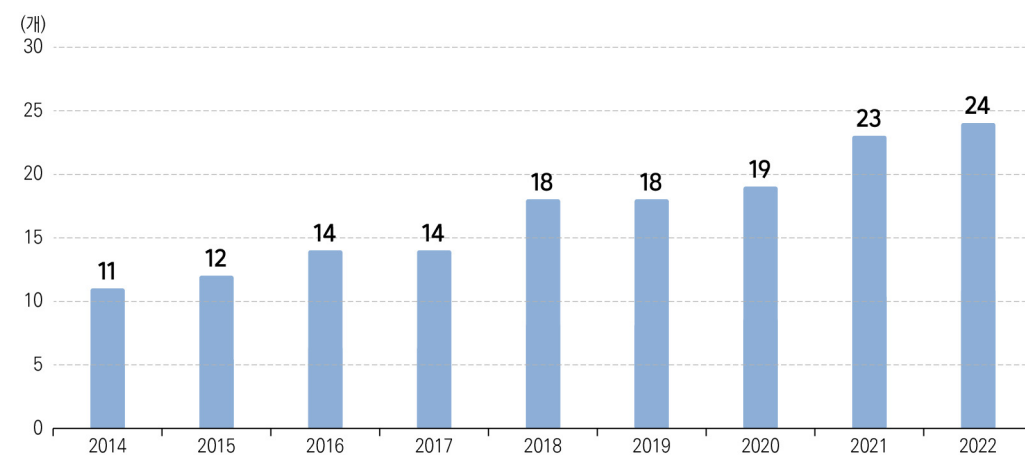
그간 온라인 점검단의 주요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점검단은 일부 공공기관의 폐기물발생량, 복리후생비, 임직원 현원 항목 등의 계산착오, 이사회 회의록, 임원 현황 등의 지연공시를 적발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시 입사지원서와 직무기술서의 누락, 국회 지적사항의 미공시 등 다양한 불성실공시 사례를 찾아냈다. 알리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자 크기 조정 기능이 없었는데, 온라인 점검단의 제안으로 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공시항목은 최소 3년 1회 이상의 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항목의 특성에 따라 정기 점검항목과 수시 점검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기 점검항목은 다시 매년 점검항목과 주기 점검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임직원 채용 현황, 복리후생 등의 사항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공공기관 경영 현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공시정보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시항목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반면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등의 사항은 주기적인 점검만으로 공시정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목들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항목, 새롭게 신설된 항목 등 점검의 시의성이 높

은 사항들은 수시 점검 대상이다. 환경과 관련된 항목,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대표적으로 이 범주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점검하는 공시항목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시점검 항목은 2014년 11개에서 2022년 24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동일 기간 공시항목이 37개에서 41개로 4개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시점검 활동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점검횟수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는 통합공시 점검횟수를 2018년 점검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2021년 점검부터 연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점검횟수를 늘린 직후에 점검항목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공시점검항목은 14개였으나 2018년에 18개로 증가했고, 2020년 점검항목은 19개였으나 2022년에 23개로 증가했다.

〈그림 V-1〉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항목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표 V-7〉 2020~2022년 통합공시 점검항목 현황

|                 | 노무 항목                                                                                                      | 재무 항목                                                                                                                |
|-----------------|------------------------------------------------------------------------------------------------------------|----------------------------------------------------------------------------------------------------------------------|
| 2020년<br>(19항목) | 복리후생비,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징계, 소송 및 법률자문,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연봉,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노동조합 관련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임직원 채용정보(2회)     |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내부감사결과, 계약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 비용추계                                 |
| 2021년<br>(23항목) | 임직원 채용정보(2회), 복리후생비,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내부규정, 임직원수, 신규채용 현황, 직원 평균보수,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노동조합 관련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2회), 장단기 차입금 현황, 수입·지출현황, 납세정보 현황,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2회), 사회공헌 활동      |
| 2022년<br>(24항목) | 신규채용 현황, 임직원 채용정보(2회),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보호(2회)                                     |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감사보고서(2회),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2회), 경영부담 비용추계(2회), 동반성장 평가결과, 청렴도 평가결과, 계약정보(3회) |

주: ‘(2회)’는 1/2차 혹은 2/3차 2차례 점검을 실시한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점검항목을 선정해 노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공시점검 지원기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를 발견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통합공시기준 제13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V-8〉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과 근거 규정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벌점 부과)**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공시항목이 정기공시 대상인지 수시공시 대상인지 여부, 정기공시 항목이 주요 항목인지 기타 항목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점검항목이 정기공시 혹은 수시공시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는 통합공시기준 ‘〈별표1〉 통합

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sup>38)</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소개, 경영목표 등 ‘일반 현황’은 연 1회(4월말) 정기공시 항목이고, ‘임직원수’는 연 4회(분기별) 정기공시 항목이다. 반면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등 ‘임원 현황’은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수시공시해야 하는 항목이다. 정기공시 항목 중 주요 항목과 기타 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을 작성할 때 정해서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이러한 사항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2023년 통합공시 항목별 공시구분 및 공시주기’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이의 일부이다. 공시구분(정기공시 혹은 수시공시)과 유형(주요 항목 혹은 기타 항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23년 기준으로 ‘퇴직임직원 재취업 현황’ 항목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현황’ 세항목은 주요 항목이고, ‘남녀 이직자 비율’ 세항목은 기타 항목에 해당한다.

〈표 V-9〉 2023년 통합공시 항목별 공시구분 및 공시주기(일부)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공시구분<br>(유형) | 공시주기<br>(공시일)         | 공시자료<br>(입력기준일)                                                                                                     |
|-----------|---------------|------|--------------|-----------------------|---------------------------------------------------------------------------------------------------------------------|
| 1. 일반현황   |               |      | 정기공시<br>(기타) | 연 1회<br>(4월 말)        | 연도 말 기준 일반현황<br>(전년도 12.31일)                                                                                        |
| 2. 내부규정   |               |      | 수시공시         | -                     | 기관의 모든 내부규정<br>(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                                                                                    |
| 3. 임직원수   | 3-1. 임직원 수    |      | 정기공시<br>(기타) | 연 4회<br>(1,4,7,10월 말) | 1월 말 : 전년도 말 기준 자료<br>4월 말 : 당해 연도 1/4분 말(3.31) 자료<br>7월 말 : 당해 연도 2/4분 말(6.30) 자료<br>10월 말 : 당해 연도 3/4분 말(9.30) 자료 |
|           | 3-2. 직급별 인원수  |      |              |                       |                                                                                                                     |
| 4. 임원현황   |               |      | 수시공시         | -                     | 기관의 임원현황 자료<br>(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                                                                                    |
| 5. 신규채용현황 | 5-1. 신규채용현황   |      | 정기공시<br>(기타) | 연 4회<br>(1,4,7,10월 말) | 1월 말 : 전년도말 기준 자료<br>4월 말 : 당해 연도 1/4분 말(3.31) 자료<br>7월 말 : 당해 연도 2/4분 말(6.30) 자료<br>10월 말 : 당해 연도 3/4분 말(9.30) 자료  |
|           | 5-2. 청년인턴채용현황 |      |              |                       |                                                                                                                     |
| 6. 임직원    | 6-1. 임원모집공고   |      | 수시공시         | -                     | 임직원 채용정보 공고기간                                                                                                       |

38) 보다 자세한 사항은 ‘Ⅲ. 통합공시제도: ① 통합공시기준’의 ‘2. 통합공시기준 주요 내용’에 있는 ‘〈표 Ⅲ-4〉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일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공시구분<br>(유형) | 공시주기<br>(공시일)         | 공시자료<br>(입력기준일)                                                                                                                    |
|--------------------|----------------------|------|--------------|-----------------------|------------------------------------------------------------------------------------------------------------------------------------|
| 채용정보               | 6-2. 직원채용정보          |      |              |                       | 시작일부터 공시                                                                                                                           |
| 7. 퇴직임직원<br>재취업 현황 | 7-1. 퇴직임직원 재취업<br>현황 |      | 정기공시<br>(주요) | 연 4회<br>(1,4,7,10월 말) | 1월 말 : 과거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br>현황 자료<br>4월 말 : 당해 연도 1/4분 말(3.31) 자료<br>7월 말 : 당해 연도 2/4분 말(6.30) 자료<br>10월 말 : 당해 연도 3/4분 말(9.30) 자료 |
|                    | 7-2. 남녀 이직자 비율       |      | 정기공시<br>(기타) | 연 1회<br>(4월 말)        | 연도 말 기준 이직자 현황<br>(전년도 12.31일)                                                                                                     |

자료: 기획재정부(2023c)

통합공시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범한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의 크기가 달라진다. 2022년 이전, 공공기관이 범하는 중과실은 ‘공시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실과 경과실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이의 해석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에 중과실과 경과실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했다. 현재 중과실은 ‘공시담당자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오류(예: 수치오류, 중요사항 누락·오기 등)로 해당 항목의 내용·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예: 연계항목의 내용 변경, 기초사실의 왜곡 등)’를 말한다. 그리고 경과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향후 중과실과 경과실의 해석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이의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V-10〉 중과실 판단기준

|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
|-----------------------------------------------------------------------------------|--------------------------------------------------------------------------------------------------------------------------------------------|
| 중과실은 공시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 중과실은 공시담당자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오류(수치오류, 중요사항 누락·오기 등)로 해당 항목의 내용·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연계항목의 내용 변경, 기초사실의 왜곡 등),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명시된 중과실과 경과실의 정의



한편 공공기관이 범할 수 있는 불성실공시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공시오류, 공시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시불이행은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미공시),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공시지연)를 말한다. 허위공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이다. 공시오류는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를 의미한다. 공시변경은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공공기관에서 수정한 경우이다.

〈표 V-11〉 불성실공시 정의 및 유형 규정

|                                                                        |  |
|------------------------------------------------------------------------|--|
| <b>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2조(정의)</b>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2. 허위공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  |
| 3. 공시오류 :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  |
| 4.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체계는 공시주기, 항목의 중요성, 과실 정도,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2〉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체계

| 구분    | 미공시    |      | 허위공시 | 공시오류 | 지연공시    | 공시변경 |
|-------|--------|------|------|------|---------|------|
|       | 고의·중과실 | 경과실  |      |      |         |      |
| 주요 항목 | 5점     | 3점   | 5점   | 3점   | -       | 0.5점 |
| 기타 항목 | 3점     | 1.5점 | 3점   | 1.5점 |         |      |
| 수시 항목 | 3점     |      | 3점   | 1.5점 | 1점~2.5점 | 0.1점 |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과 〈별표 2〉의 내용을 정리함

별점체계에 나타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성실공시를 한 공공기관은 최대 5점, 최소 0.1점의 별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주요 항목에 대해 고의·중과실의 미공시를 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면 5점의 별점을 받는다. 반면

수시 항목의 공시를 변경하면 0.1점의 별점을 받는다. 한편 동일 사안에 대해 2건 이상의 공시의무 위반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sup>39)</sup>

둘째, 공공기관이 동일한 유형의 불성실공시를 범해도, 점검항목이 주요 항목인지 기타 항목인지 여부에 따라서 별점의 크기가 다르다. 가령 공공기관이 경과실로 주요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다시 말해 공시오류를 범한 경우, 3점의 별점을 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불성실공시를 기타 항목에서 범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1.5점의 별점을 부과한다.

셋째, 정부는 경과실에 비해 중과실에 더 큰 별점을 부과한다. 특정 공공기관이 기타 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면, 별점 3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타 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면, 별점 1.5점이 부과된다.

넷째, 별점은 세항목별, 공시횟수별, 혹은 수정 횟수당 과점된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세항목별로 3점의 별점을 받는다. 만일 A라는 주요 항목 내 3개의 세항목에서 허위공시를 범한 경우, 공공기관은 총 9점의 별점을 받는다.

다섯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은 연중 빈번하게 발생해 담당자의 공시부담이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에 별점을 부과할 때, ‘임직원 채용정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 가령 ‘임직원 채용정보’ 이외의 다른 공시항목에서 허위공시를 하면, 공공기관은 별점 3점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임직원 채용정보에서 허위공시를 한 경우, 1.5점의 별점이 부과된다.

---

39)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②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표 V-13〉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1): 정기공시

| 불성실 유형  | 위반 내용                                                                    | 벌점   |
|---------|--------------------------------------------------------------------------|------|
| 1. 미공시  | ■ 주요 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5점   |
|         | ■ 주요 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         | ■ 기타 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         | ■ 기타 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 과점                                           | 1.5점 |
| 2. 허위공시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5점   |
|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 3. 공시오류 | ■ 경과실로 주요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3점   |
|         | ■ 경과실로 기타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 1.5점 |
| 4. 공시변경 |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 0.5점 |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표 V-14〉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 (2): 수시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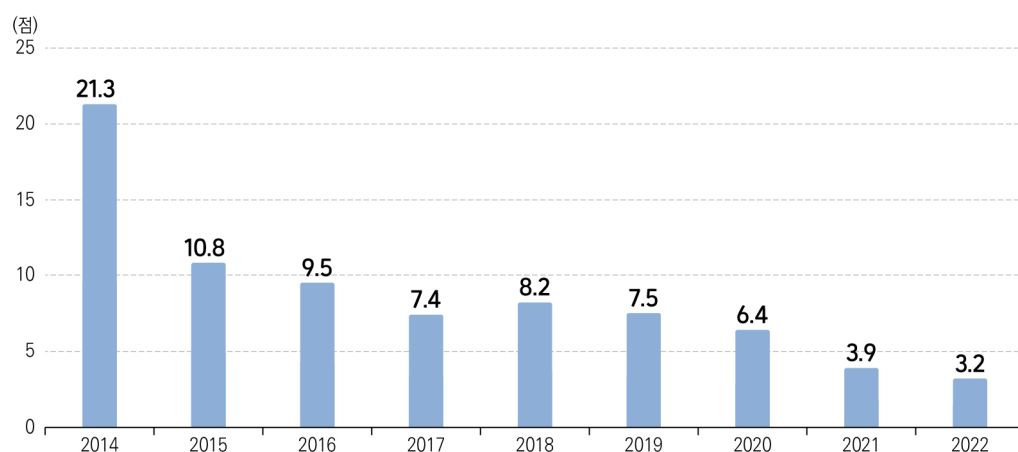
| 불성실 유형  | 위반 내용                                                                                                                                                                                                                                                           | 별점                   |
|---------|-----------------------------------------------------------------------------------------------------------------------------------------------------------------------------------------------------------------------------------------------------------------|----------------------|
| 1. 미공시  | ■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사유발생 횟수별 과점                                                                                                                                                                                                                                     | 3점                   |
| 2. 지연공시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2.5점                 |
|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2점                   |
|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1.5점                 |
|         |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1점                   |
| 3. 허위공시 | ■ 임직원 채용정보 이외의 항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3점                   |
|         | ■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1.5점                 |
| 4. 공시오류 | ■ 임직원 채용정보 이외의 항목에서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1.5점                 |
|         | ■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서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 0.75점                |
| 5. 공시변경 | ■ 입찰정보, 임직원 채용정보 이외의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 0.1점                 |
|         | ■ 입찰정보,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br>〈조정계수〉<br>-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건 이하인 경우 1<br>-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건 초과 1,000건 이하인 경우 2<br>-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1,000건 초과 5,000건 이하인 경우 4<br>- 상기 2개 항목 공시건수의 합계가 5,000건 초과인 경우 10 | 0.1점 *<br>1/조정<br>계수 |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

### 3. 통합공시점검 결과

정부는 2013년 통합공시점검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시 점검을 실시해왔다. 그동안의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통합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통합공시점검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부과한 평균별점은 21.3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기관이 받은 평균별점은 점차 감소했다. 2022년 공시점검에서 공공기관이 받은 평균별점은 3.2점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V-2〉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 평균별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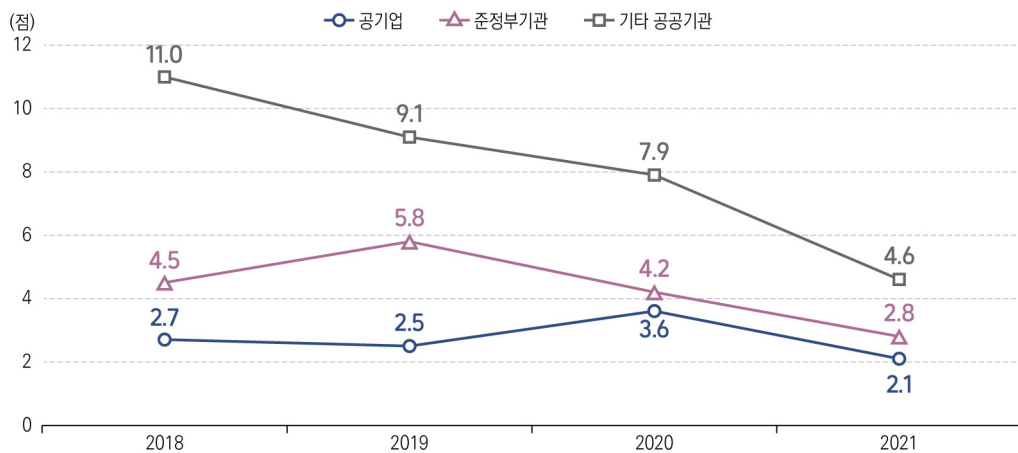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소규모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이 대규모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을 상회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준정부기관보다 크며, 준정부기관은 기타 공공기관보다 크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모든 연도에 걸쳐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이 준정부기관의 평균별점을 상회하고, 준정부기관의 평균별점이 공기업의 평균별점을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2018년 공시점검 결과,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의 평균별점은 각각 11.0점, 4.5점, 2.7점이었다. 그리고 2021년 공시점검 결과,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의 평균별점은 각각 4.6점, 2.8점, 2.1점이었다.

셋째, 기타 공공기관의 공시정보 품질 개선 정도가 가장 크고, 이어서 준정부기관, 공기업 순서이다.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은 2018년 11.0점에서 2021년 4.6점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공기업의 평균별점은 동일 기간 2.7점에서 2.1점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별점 차이는 2018년 8.3점(=11.0-2.7)에서 2021년 2.5점(=4.6-2.1)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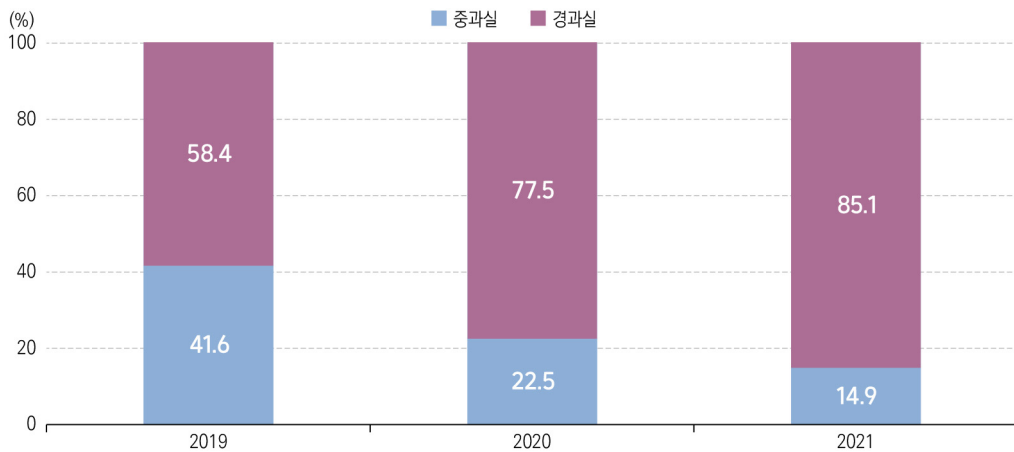
〈그림 V-3〉 공공기관 유형별 평균별점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넷째, 공공기관의 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9년 공시점 검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에 대해 부과한 벌점 중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벌점의 규모는 전체 벌점의 41.6%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과실 벌점의 비중은 2021년 14.9%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는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범하는 대부분의 불성실공시가 단순오기, 계산착오 등 경과실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V-4〉 과실 유형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 4. 통합공시점검 사후조치

기획재정부는 공시점검과정에서 불성실공시를 적발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벌점을 부과한다. 그리고 특정 공공기관의 벌점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면,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취한다. 다른 한편, 특정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매우 잘 수행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해당기관을 우수공시기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는다. 연간 벌점 40점을 초과한 공공기관과 2년 연속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기관 중 전년 대비 연간 벌점이 증가한 경우, 정부는 해당기관을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간 벌점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벌점이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주의 등 사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표 V-15〉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별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간 20점을 초과한 경우 : 「기관주의」조치
  2. 연간 40점을 초과한 경우 : 「불성실공시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3. 2년 연속 ‘기관주의’ 이상에 해당되는 연간 별점 20점을 초과한 기관 중 전년 대비 연간 별점이 증가한 경우 : 「불성실공시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4.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간 부과별점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관련자 인사조치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알리오시스템에 3개월간 게시하고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당해 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조치 결과를 당해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up>40)</sup>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정 기관이 연간 별점 4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기획재정부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오에 3개월 동안 게시하고,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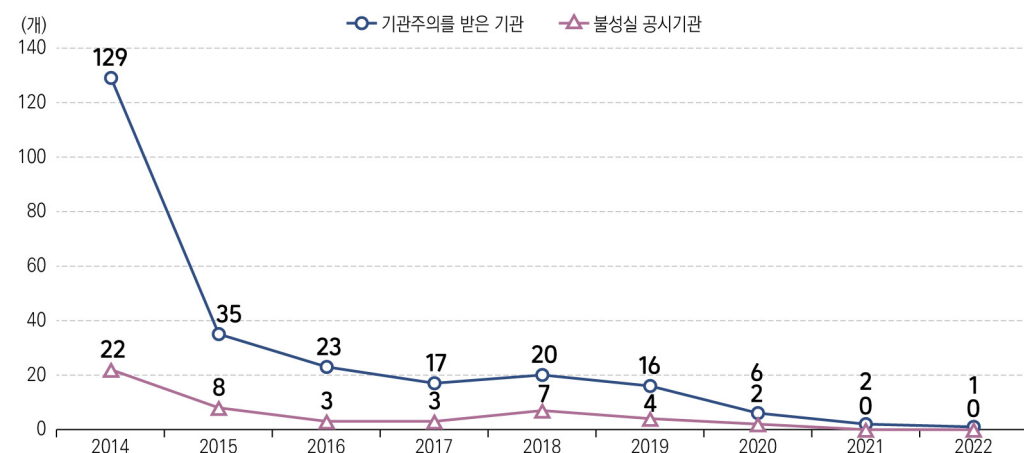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시점검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공시점검이 도입된 초기인 2014년에 기관주의를 받은 공공기관은 129개, 불성실 공시기관은 22개였다.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 공시기관은 2015년에 가파르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주의 기관은 35개, 불성실 공시기관은 8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sup>41)</sup> 이후에도 기관주의 기관과 불성실 공시기관

40) ‘불성실 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양식은 통합공시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은 1개(경북대학교 병원)에 불과했으며,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이는 공시점검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공기관 통합공시정보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V-5〉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 공시기관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우수공시기관 혹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한다. 먼저 최근 3년 연속으로 별점이 0점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다. 단,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은 최근 ‘3년 연속’ 대신 ‘2년 연속’ 기준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연속으로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는 해당기관을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수공시기관 지정 등은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우수공시기관 등을 지정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첫째, 우수공시기관 등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오에 게시한다. 둘

41) 2015년 5월 28일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이 개정되어 기관주의 조치와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기준이 약화되었다. 기관주의 조치의 기준은 연간 별점 10점을 초과한 경우에서 20점을 초과한 경우로,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기준은 연간 별점 20점을 초과한 경우에서 연간 별점 40점을 초과한 경우로 변경되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기관주의 조치 기관과 불성실 공시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는 이러한 사후조치 기준 변경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째, 공시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기타 지원을 한다. 셋째, 최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으로 별점이 0점이어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차년도 공시점검을 면제받는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3년 공시점검을 면제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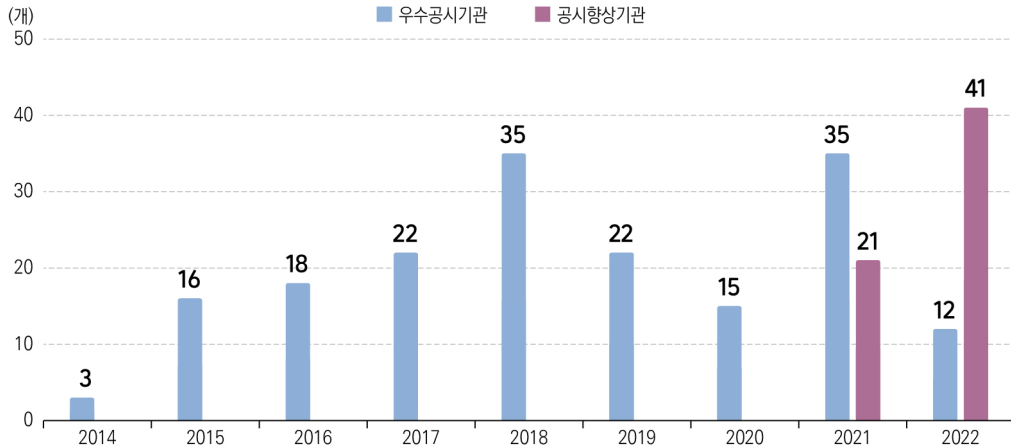
#### 〈표 V-16〉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규정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5조(우수공시기관 등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별점(이하 별점)이 20점 이하인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우수공시기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하여 별점이 0점인 경우 : 「우수공시기관」
  2. 최근 2년 연속하여 별점이 전년 대비 100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 : 「공시향상기관」
  3. 단,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호 단서 규정과 달리 3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공시기관」 등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
  2.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기타 지원
  3.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간)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별점이 0점인 경우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공시기관 등 지정 결과를 당해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래 그림은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2021년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5개 공공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22년 공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등 12개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공시향상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21개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41개로 거의 두 배만큼 늘어났다.

〈그림 V-6〉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표 V-17〉 2021년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현황

| 구분              | 유형                 | 기관명                                                                                                                                                                                                                                                            |
|-----------------|--------------------|----------------------------------------------------------------------------------------------------------------------------------------------------------------------------------------------------------------------------------------------------------------|
| 우수공시기관<br>(35개) | 공기업·준정부기관<br>(12개) |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기타 공공기관<br>(23개)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외동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공시향상기관<br>(21개) | 기타 공공기관<br>(21개)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경상대학교병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

자료: 기획재정부

〈표 V-18〉 2022년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현황

| 구분                  | 유형                  | 기관명                                                                                                                                                                                                                                                                     |
|---------------------|---------------------|-------------------------------------------------------------------------------------------------------------------------------------------------------------------------------------------------------------------------------------------------------------------------|
| 우수공시기관<br>(12개)     | 준정부<br>기관<br>(6개)   |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관리원,<br>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
|                     | 기타<br>공공기관<br>(6개)  | 국립광주과학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br>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공시향상<br>기관<br>(41개) | 공기업<br>(6개)         | (주)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여수광양항만공사,<br>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
|                     | 준정부<br>기관<br>(14개)  |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br>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br>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b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공단,<br>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기타<br>공공기관<br>(21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br>아동권리보장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한국에너지재단,<br>코레일유통(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br>한국도박문제예방방지위원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br>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br>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

이처럼 우수공시기관이 크게 줄어들고 공시향상기관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도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시기관을 지정할 당시, 정부는 최근 3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 동안 별점이 0점인 경우 혹은 2년 연속 별점이 하락하고 점검연도에 별점이 0점(단, 기타 공공기관은 점검연도에 별점이 0점)인 경우에 해당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 총 3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6개 기관은 최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동안 무별점이었기 때문에 우수공시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29개 기관은 2년 연속 별점이 감소했고 점검연도에 무별점(기타 공공기관은 점검연도에 무별점)이었기 때문에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23년 2월 3일 통합공시기준이 개정되어, 우수공시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전과 동일하게 최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으로 무별점인 경우, 정

부는 해당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2년 연속 별점이 감소하고 점검 연도에 무별점(기타 공공기관은 점검연도에 무별점)인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 지정 요건에서 제외된다. 2022년도 공시점검 결과, 총 12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무별점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만일 최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하여 무별점인 경우로 한정한다면, 우수공시기관은 2021년 6개에 2022년 12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종합하면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우수공시기관이 크게 줄어든 것은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1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기준 변경

| 변경 이전                                                                                                                                                                           | 변경 이후                                                                                                       |
|---------------------------------------------------------------------------------------------------------------------------------------------------------------------------------|-------------------------------------------------------------------------------------------------------------|
| <p>우수공시기관: 최근 3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간 별점이 0점인 경우 및 2년 연속 별점이 하락하고 점검연도에 별점이 0점(단, 기타 공공기관은 점검연도에 별점이 0점)인 경우</p> <p>공시향상기관: 최근 3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간 별점이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p> | <p>우수공시기관: 최근 3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하여 별점이 0점인 경우</p> <p>공시향상기관: 최근 2년 연속하여 별점이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p> |

자료: '변경 이전'은 2022년 2월 4일 개정 통합공시기준, '변경 이후'는 2023년 2월 3일 개정 통합공시기준

〈표 V-20〉 2021년과 2022년 우수공시기관 지정 현황 비교

| 구 분                                  | '21년 | '22년    |
|--------------------------------------|------|---------|
| 최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별점을 받지 않은 경우   | 6개   | 12개     |
| 최근 2년 연속 별점이 하락하고 당해 연도 별점을 받지 않은 경우 | 29개  | 〈기준 삭제〉 |

자료: 기획재정부(2023d)

우수공시기관 지정 기준과 달리 공시향상기관 지정 기준은 약화되었다. 2023년 통합공시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최근 3년(단, 기타 공공기관은 2년) 동안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공공기관이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공시향상기관 지정 기준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별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약화되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기타 공공기관만이 '2년' 연속 기준을 적용받

았으나, 지금은 기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2년’ 연속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 공시향상기관이 2021년 21개에서 2022년 41개로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 5. 향후 고려사항

통합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정부는 통합공시점검제도를 도입해 통합공시 정보가 정확한지, 정보이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매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의 품질은 과거보다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통합공시점검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드백 기능 강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기능 활성화, 정책점검 기능 제고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존한다.

첫째,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시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우선 정부는 통합공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맞추어 알리오에 정보를 공시한다. 그리고 통합공시제도는 정보의 신뢰성을 전제로 운용되므로, 정부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 품질을 관리한다. 통합공시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기반해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통합공시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공시점검 결과는 통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피드백 과정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등 사후조치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공시기준과 통합공시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별점부과식 점검방식을 개선해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첫 번째 개선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별점부과식 점검방식은 관련 항목의 공시가 정

확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항목별 공시품질을 분석·평가하거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통합공시점검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시점검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무법인, 회계법인, 공시점검지원기관 등 통합공시점검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법인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공시점검은 정부 주도로 노무법인 등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은 점검을 받는 대상일 뿐 점검을 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의 공시정보 정확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각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이다. 정부 등 외부에서 진행하는 통합공시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외부의 공시점검자와 공공기관의 내부의 공시담당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점검은 내부점검에 비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공시점검의 주체로 참여할 때, 외부점검과 내부점검은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공시정보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알리오 시스템에 자율검증 기능이 추가되면, 공시담당자는 공시정보를 입력할 때 범하는 실수나 오류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사후에 오류 사항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시점검 체계에서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는 본인들이 공시오류를 범했음을 알고 있어도, 사후에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시변경을 할 때 받는 벌점은 다른 유형의 불성실공시를 범했을 때 받는 벌점에 비해서 작다. 하지만 두 벌점 간의 격차는 공공기관이 공시오류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시오류를 신고할 때 받는 벌점을 더 낮추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시점검 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점검에서 벗어나 정책점검 기능에 집중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러한 자진신고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에는 복대리인 문제에 따른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조택, 2007; 유승원, 2009). 국민은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유인이 거의 없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사전적 공개, 원문 정보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제도들만으로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를 보완할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민간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공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OECD, 2015). 민간기업, 특히 상장기업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화된 경영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통합공시제도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시제도를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통합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 현황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 즉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합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맞추어 알리오에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통합공시제도는 통합공시기준, 알리오, 통합공시점검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통합공시제도의 각 구성 요소별로 운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공공기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해서 통합공시 항목,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통합공시기준은 이런 사항들을 규정한다. 통합공시기준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통합공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등은 본문에 포함되지 않고 별표로 제시된다. 또한 본문과 별표에 담지 못하는 항목별 통합공시 요령, 공시 유의사항 등은 통합공시 매뉴얼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는 통합공시기준 본문과 별표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공시 항목은 2007년 27개에서 2023년 46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21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먼저 2021년에는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 혹은 보완되었다. 2022년에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ESG 평가지표를 참고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ESG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2023년에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 범위가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에서 외부배출(Scope 3)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ESG 운영위원회’, ‘ESG 경영 현황’ 등의 항목이 신설되었다. 또한 정부는 공시항목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해 ‘ESG 운영’ 대분류를 추가했다.

이처럼 정부는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공공기관의 ESG 공시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공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민간부문의 ESG 공시제도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중에서 공공부문에 적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구체적으로 IFRS S1과 IFRS S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회계기준으로 IFRS를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ESG 공시기준으로 IFRS S1과 IFRS S2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

ESG 공시와 관련된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비록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 공공부문도 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선제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정부는 공공부문이 공개하는 정보 중 통합공시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통합공시제도를 이용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들도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가령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이 중에서 일부를 실제로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다른 부처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ESG 정보가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합공시에 추가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혹은 ESG 경영보고서와 통합공시 항목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통합공시 항목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다. 하지만 통합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통합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2023년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했고, 이는 ESG 경영보고서의 형태로 공시된다. ESG 경영보고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ESG 경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경우, 공공기관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3c). 따라서 ESG 경영보고서는 앞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ESG 경영보고서에는 통합공시되지 않는 사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새로운 ESG 공시항목을 찾는 과정에서 ESG 경영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ESG 경영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항목을 알리오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알리오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연간 알리오 접속자는 2017년 약

330만 명에서 2022년 약 1,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알리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고, 국민은 이러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알리오를 방문하는 국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등 정보이용자는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시하고 있는 항목의 개수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항목은 총 46개이다. 각 분기별 공시항목은 1분기 30개, 2분기 16개, 3분기 14개, 4분기 10개, 수시공시는 15개이다. 알리오는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시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정보이용자는 기관별 공시를 통해 특정 공공기관의 모든 공시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 공시를 통해서 개별 공공기관의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 주요 수시공시가 있다. 주요 수시공시는 채용정보, 임원모집공고 등 주요 수시항목의 현황과 통계를 보여준다. 한편 알리오는 국민 등 정보이용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정보이용자는 전체 공공기관의 특정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주요 통계나 통계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주요 통계를 이용해 공공기관 전체의 신규채용,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재무정보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의 공공기관 전체 현황은 통계분석 기능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다.

알리오는 2006년 12월 구축된 이후 수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를테면 정부는 2015년 4월에 민간의 전자공시 방식을 도입했다. DART라 불리는 이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정보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2년 1월에 알리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성을 높였다. 우선 정보이용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화면 구성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변경했고, 시각화 요소를 늘리고 검색과 분석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

2022년 알리오 개편 당시, 정부는 공시보고서의 불러오기 기능, 공시정보의 자동합

계 기능, 항목별 오류검증 기능을 신설해 알리오 편집기를 일부 개선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리오 시스템 개선은 그동안 주로 정보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그런데 알리오 시스템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알리오 시스템의 개선은 정보 수요자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국민이 접속하는 알리오 홈페이지에 비해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알리오 편집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알리오 편집기 등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공시담당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시제도는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 국민이 공시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면, 통합공시제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합공시점검 제도를 도입해 통합공시 정보가 정확한지, 정보이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통합공시점검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공시점검은 201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제도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연 1회 실시되던 점검은 2018년도 점검부터 연 2회 실시되기 시작했고, 2021년도 점검부터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점검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점검하는 공시항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시점검 항목은 2014년 11개에서 2022년 24개로 크게 증가했다.

공시점검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가 발견되면 정부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범할 수 있는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공시오류, 공시변경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이 받는 벌점의 크기는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주기(수시 혹은 정기공시), 항목의 중요성(중요 혹은 기타 항목), 과실 정도(경과실 혹은 중과실)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수행되어온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었다. 2014년에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부과한 평균벌점은 21.3점에 이르렀으나, 2022년 공시점검에서 각 공공기관이 받은 평균벌점은 3.2점에 불과했다. 둘째, 소규모 기관의 평균벌점이 대규모 기관의 평균벌점을

상회했다. 구체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이 받은 평균별점이 준정부기관이 받은 평균별점보다 컸다. 또한 준정부기관의 평균별점은 공기업의 평균별점을 상회했다. 셋째, 공시정보의 품질 개선 정도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별점은 2018년 11.0점에서 2021년 4.6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동일 기간 공기업의 평균별점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넷째, 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가 줄어들었다. 최근 공공기관이 범하는 불성실공시의 대부분은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오기, 계산착오 등 경과실 때문이었다.

공공기관의 불성실공시가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별점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의 별점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면, 정부는 해당기관을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반대로 특정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매우 잘 수행한 경우, 정부는 해당기관을 우수공시기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4년에 기관주의를 받은 공공기관은 129개, 불성실 공시기관은 22개였으나, 2022년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은 1개에 불과했으며,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다만, 우수공시기관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우수공시기관은 줄어들고 공시향상기관은 늘어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우수공시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향상기관의 지정 요건을 약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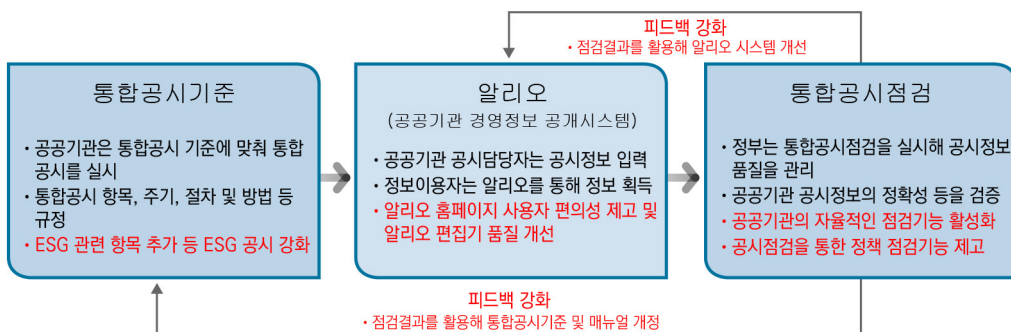
이처럼 통합공시점검은 공시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에 대한 피드백, 정책점검, 공공기관의 자율 점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존한다. 첫째,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통합공시점검 결과는 주로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등 사후조치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공시기준과 통합공시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때, 통합공시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공시점검의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별점부과식 점검은 관련 항목의 공시가 정확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항목별 공시품질을 분석하거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통합공시점검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공시점검을 실제 담당하는 이들

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셋째, 공공기관의 자율점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외부의 공시점검자와 공공기관 내부의 공시담당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점검은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점검을 받는 대상이었을 뿐 점검을 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공공기관이 공시점검의 주체로 참여할 때, 외부점검과 내부점검은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공시정보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알리오 시스템에 자율검증 기능이 추가되면, 공시담당자는 공시정보를 입력할 때 범하는 실수나 오류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사후에 오류 사항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1〉 통합공시제도 개선 방향



본 보고서는 통합공시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통합공시기준, 알리오 시스템, 통합공시점검 측면에서 다루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공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알리오의 사용자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공시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공시 환경 변화 등을 반영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겠다. 첫째, 민간의 ESG 공시 동향 등을 반영해 공공부문의 ESG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이용하는 알리오 홈페이지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사용하는 알리오 편집기의 품질과 기능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시점검을 통한 정책점검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통합공시기준과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시제도는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통합공시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나 정보이용자는 통합공시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통합공시제도와 관련된 연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2015). 알리오(ALIO)를 DART 방식으로 개편하여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 - 공공기관 부채비율 전년대비 15.6%p 개선. 보도자료 (2015.04.30.)
- 기획재정부. (2019). 2018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 공시기관 대폭 증가. 보도자료 (2019.03.28.).
- 기획재정부. (2021).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폭 확대한다. 보도자료(2021.03.04).
- 기획재정부. (2022a).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공공기관의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 보도자료(2022.02.07).
- 기획재정부. (2022b).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점검 강화로 공공기관 공시 품질 크게 개선. 보도자료(2022.04.08.).
- 기획재정부. (2022c). 확 달라진 알리오,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갑니다 -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사용자 친화적 개편. 보도자료(2022.01.27.).
- 기획재정부. (2023a).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2023.01.30.).
- 기획재정부. (2023b).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ESG 공시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점검제도 개선. 보도자료(2023.02.07.).
- 기획재정부. (2023c).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3년 제1차 개정('23.03.24).
- 기획재정부. (2023d). '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전년대비 정확해졌다. 보도자료 (2023.04.04.).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2021 공공기관 현황편람.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2023). 공공기관 통합공시 오류사례집.
- 김진수·허경선·김태훈·문창오. (2010).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21).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 관계부처 합동. (2022).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 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 유승원. (2009).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31(1): 71-103.
- 윤태범. (2012).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연구총서 12-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택. (2007).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51-274.
- 한국거래소. (2020). 2020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 한국회계기준원. (2023).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 허경선·라영재. (2011). 공공기관 성과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Musgrave, R. (1959).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 OECD. (201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 Paris: OECD Publishing.

#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연월** 2023년 12월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 재정정보분석센터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인쇄처** 경성문화사

**I S B N** 979-11-91094-31-2

---

